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Operation plan Taekwondo Grand Master

2020. 12.

연구책임자 : 성 문 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공동연구자 : 김 미 숙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 정 학 (경 희 대 학 교 교 수)

김 화 룡 (한국교통대학교강사)

발 간 사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사회·경제·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전 세계는 백신개발·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검사 신속화 등 바이러스를 잠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 4차 대유행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는 체육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체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많은 국내외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국가대표선수들은 컨디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도 경기가 중단되거나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체육시설 이용제한으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스포츠활동을 통한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면과 단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과학원은 스포츠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동시에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내외 환경 및 체육계 변화 대응 선도적 연구추진과 스포츠정책포럼(월 1회) 신설, 주간 스포츠현안과 진단(주 1회) 신규발간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공유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엘리트선수 경기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AI,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훈련지원 시스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과학원은 16건의 기본과제, 5건의 현안과제, 53건의 수탁과제, 32건의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심층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 민간지원·후원을 통한 경기단체의 재원확보 방안, 국제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자 장려금 환수제도 정비방안, 스포츠클럽 디비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0교시 체육활동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학교체육관형 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함께 스포츠산업 신 남방국가 전략적 진출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및 스포츠산업 가계지출 조사 등 스포츠산업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도 추진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스포츠산업 고용 및 운영현황 조사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올 한해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실을 보고서로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 참여해 주신 과학원의 연구위원, 내·외부 공동연구자, 자문위원, 초빙 및 위촉연구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스포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회고할 때마다 과연 우리 과학원이 국가 스포츠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스포츠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스포츠 관련 다양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지침서가 되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 내용이나 문맥상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채워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2020년 사회 곳곳에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위기에 적극 맞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 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실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때, 펜데믹은 기존의 질서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학원은 지식기반의 혁신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나온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국민체육진흥의 새로운 길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 장 정 영 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태권도대사범 개념과 적용대상	8
1. 태권도대사범의 개념과 정의	8
2. 태권도대사범의 적용대상	9
제2장 유사제도 및 입법 사례 분석	11
제1절 분석의 기본 방향	13
제2절 유사 제도 분석	14
1. 국내 유사 제도	14
2. 해외 유사 사례	34
제3절 입법 사례 분석	37
1. 유사 제도 입법 사례	37
2. 전담기관 지정 입법사례	5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60
1. 유사 제도	60
2. 입법 사례	62
제3장 태권도대사범 운영을 위한 델파이조사 분석	65
제1절 조사개요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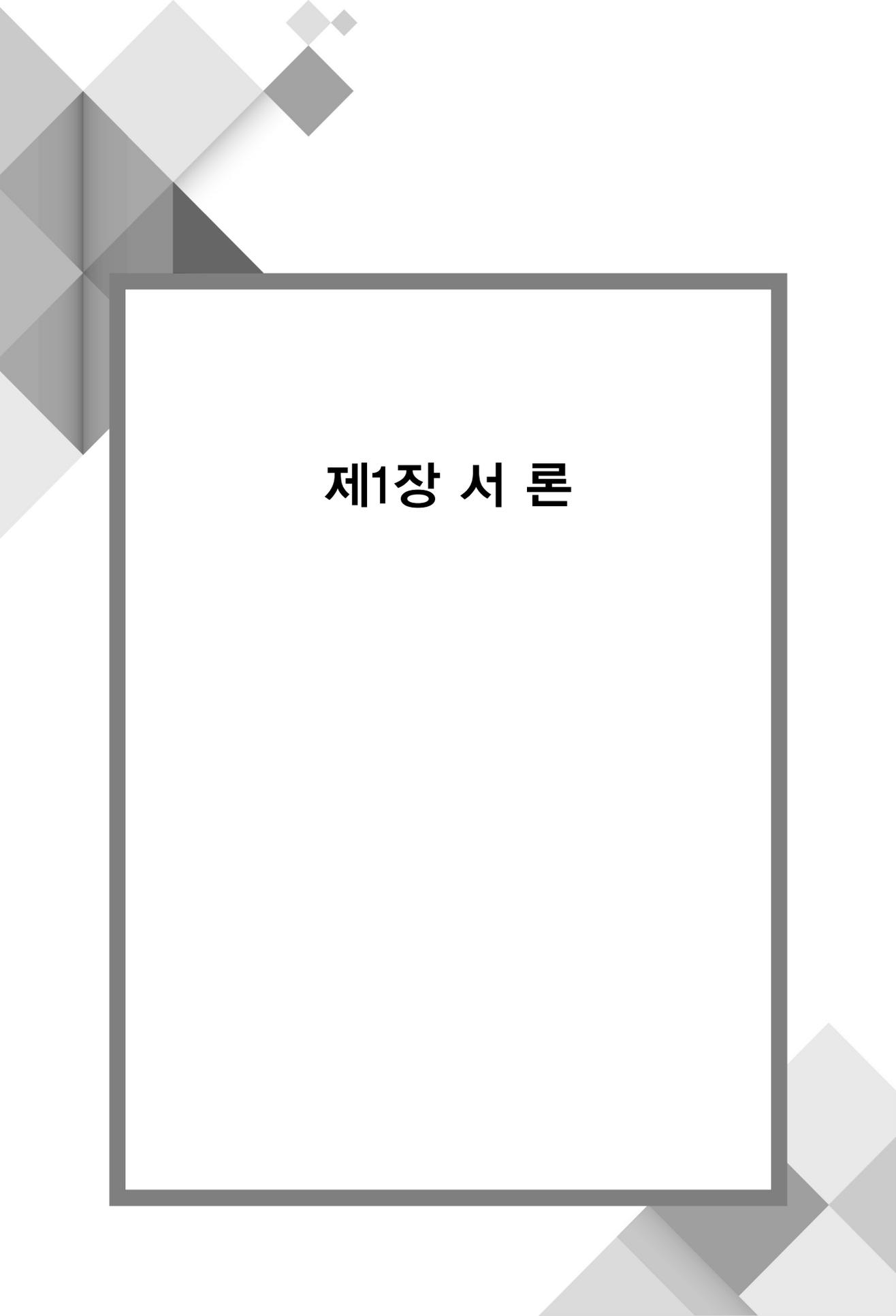
Contents

제2절 조사방법	67
1. 조사대상	67
2. 조사절차	68
제3절 분석결과	69
1. 태권도대사범 자격요건	69
2. 전담기관 지정	72
3. 운영에 대한 기타 제안	75
제4장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방안	79
제1절 태권도대사범 위상 명확화	81
제2절 태권도대사범 지정지표 개발	82
1. 지정 범위 설정	82
2. 국내외 태권도 보급 기여 지표	84
3. 윤리성 및 그 밖에 지표	87
제3절 전담기관 지정 및 절차	98
제4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1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절차	101
2. 후보자 공개 검증	102
3.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103
4. 부상(副賞)의 수여	105
제5장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하위법령 개발	107
제1절 기본 방향	109
제2절 하위법령안 개발	110
1. 시행령 개발	110
2. 시행규칙 개발	117

제3절 운영 규정(고시)안 개발	129
1.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운영 규정	129
2. 전담기관 운영 규정	133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2

표 목 차

표 3-1.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67
표 3-2. 국내외 보급기여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69
표 3-3. 윤리성 범주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1
표 3-4. 그 밖의 자격범주 사항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2
표 3-5. 전담기관 지정(지정기준)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3
표 3-6. 전담기관 지정(지정절차)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4
표 3-7.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5
표 3-8.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방향성)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77

The page features decorative geometric patterns in the corners. The top-left corner is filled with overlapping squares and triangles in various shades of gray, creating a layered, architectural effect. A similar pattern is visible in the bottom-right corner. The central area of the page is enclosed in a thick, dark gray rectangular border.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0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공포된 태권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공포된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요건 일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12월 4일 태권도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사범’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태권도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진 사범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태권도법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태권도대사범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태권도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대사범 지정 운영과 관련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명인’ 제도를 운영한 곳은 있다.

명인제도는 정부 각 부처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외에 식품명인, 농업기술명인 등을 지정하여 각 기능에 대한 보존, 계승하고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제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대한민국명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의 ‘한국예술문화명인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명인’이란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난 유명한 사람(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으로 단순히 특정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난 유명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태권도계에서 지칭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진 사범’으로서의 대사범과는

상당한 개념적 차이가 있다.

개정된 태권도법에 의하면 태권도대사범은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고,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태권도대사범은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은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법 제21조의2 제2항).

따라서 태권도법에 의해 태권도대사범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9단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과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심사할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위임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정 기준은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설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요건별 세부 평가 기준 작성하여 기준별 평가지표를 계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증을 보유한 사범을 기본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 기여,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다시 세분화하여 선정지표를 구성하여 각 지표별 측정 기준(점수)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8항에서 위임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법에 의한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요건들(제1항)을 기본적으로 검증하고 선정할 전담기관의 지정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8항)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제9항)을 개발하여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 규정된 ‘태권도대사범’제도의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앞에서 기술했듯이 이 연구는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 위임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요건 일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대한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안을 개발하여 태권도대사범의 객관적 선정기준과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첫째, 태권도대사범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현재 태권도대사범에 대한 개념은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태권도계 일부에서 대사범(大師範)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대사범’은 ‘태권도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진 사범을 높여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즉,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진 사범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현행 국기원의 사범 규정에 의하면 4단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범으로 호칭할 수 있어 태권도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범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질 경우 모두 대사범으로 부를 수 있다. 이는 태권도법에서 정한 9단 이상의 법률적 의미로서의 대사범과 용어적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태권도대사범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다.

둘째, 태권도대사범제 운영과 같은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관련 대사범제 운영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전 파악되지만 유사성을 가진 명인, 명장제도는 다양했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도입배경,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의 시사점을 찾았다.

셋째, 국내외 태권도 보급 기여, 윤리성 등 지정 기준과 각 기준별 평가지표(정성, 정량 포함)를 개발하였다. 지정지표는 명인·명장제 등 사람에 대한 명예지위를 보장하는 지정 또는 선정제도를 중심으로 지표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정지표 개발에 반영하였다.

넷째, 태권도대사범제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유사사례 및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조사 분석, 연구된 자료를 종합하여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 위임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요건,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개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활용하게 될 연구방법은 연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첫째, 태권도대사범제 운영과 관련한 법률 분석, 국내외 운영 유사사례, 유사사례별 선정지표 분석 등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헌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입법자료,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이며,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내의 명인·명장 선정제도, 외국의 유사사례로는 일본의 무술공로자표창제와 중국의 중화무림백걸 선정제도 등이다.

둘째, 대사범제 선정지표의 명료화와 객관화를 위해 델파이조사와 더불어 전문가와 태권도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0명의 태권도관련 학계(10명) 및 현장 전문가(원로 5명, 지도자 5명)를 상대로 실시하였다. 전문가회의는 선정지표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전문가회의는 비 태권도계와 태권도계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다만 전문가회의에서는 태권도관련 단체 종사자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회의시 제도 운영 기관선정 지표관련 해서 기관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 부분은 이 연구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 또는 태권도단체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공청회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하위법령과 선정지표들에 태권도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제3절 태권도대사범 개념과 적용대상

1. 태권도대사범의 개념과 정의

태권도대사범제가 도입된 것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해야하는 법적 근거에 기인한다.

태권도법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의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i)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ii)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iii)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모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적으로 태권도대사범은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난 유명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예가 뛰어난 것(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것)외에 업적 조건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과 태권도대사범으로서 태권도계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정된 태권도대사범은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은 일체 제공하지 않는다(법 제21조의2 제2항).

따라서 태권도법에 의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태권도 분야에 대한 기본적 자격으로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을 전제조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들 대상자 중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과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들 조건 중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은 태권도의 진흥·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여 현 시대에 귀감이 되는 등 훌륭한 공적을 남긴 9단 이상의 태권도 사범의 업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 술기 체계화 및 보급 등을 통한 후학 양성, 태권도 관련 (기술)연구개발 및 전파 로 세계화에 기여한 업적 등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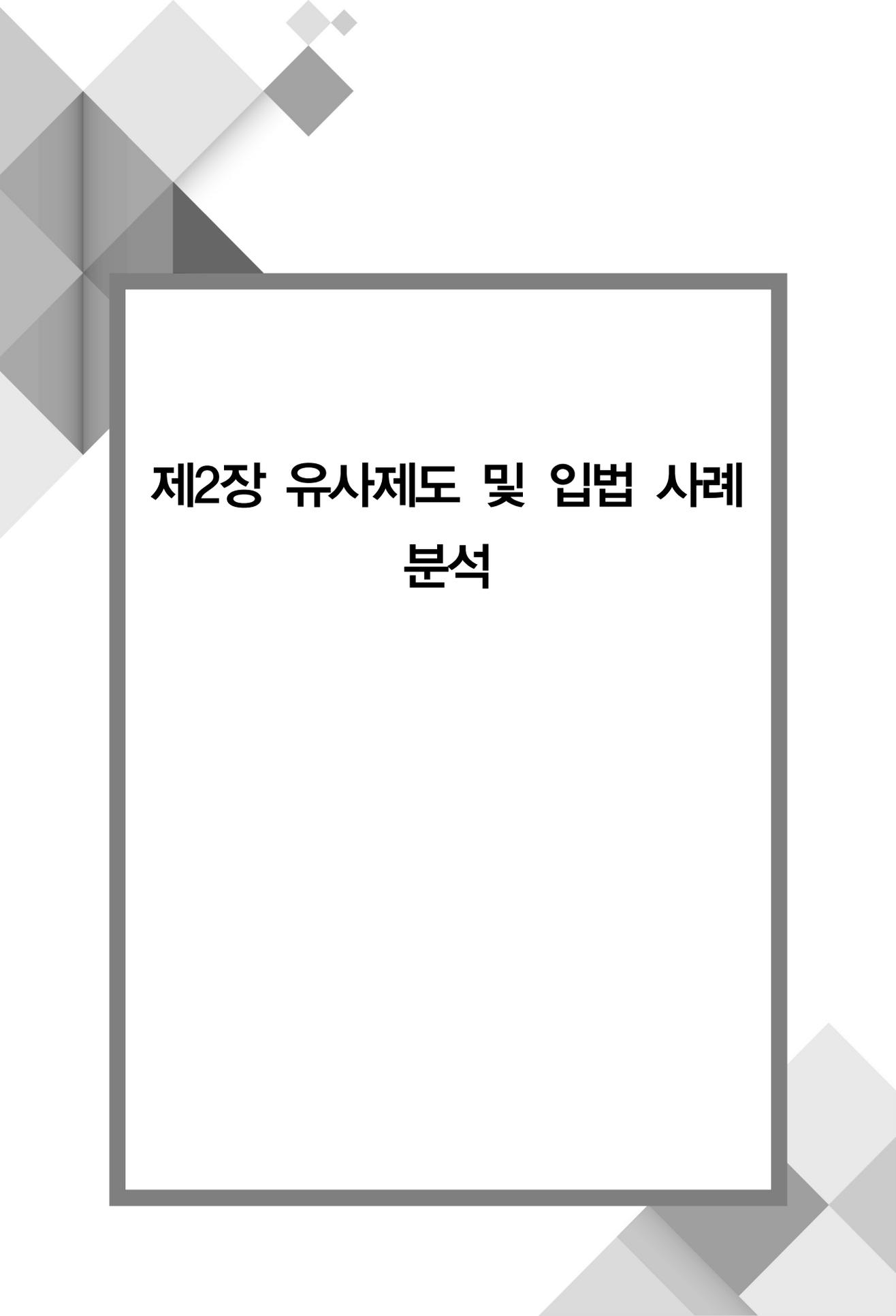
또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측면에서는 윤리성, 도덕성,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나 비위 등을 야기하지 않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 이는 태권도 9단증을 보유하면서 태권도 발전의 기여도와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이란 용어를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증을 보유하면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고, 윤리적 결함이 없어 태권도인에게 귀감이 되어 태권도법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태권도대사범의 적용대상

태권도법에 의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태권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을 전제조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 세계 210개 회원국가 유단자 총 5,155,219명(국내 4,408,064명, 해외 747,155명) 중 9단 보유자인 1,072명(국내 870명, 해외 202명)이 1차적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국기원 내부자료, 2020)



제2장 유사제도 및 입법 사례 분석

제2장 유사제도 및 입법 사례 분석

제1절 분석의 기본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제 등을 마련하여 수상자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태권도 분야에서는 태권도계 공헌자에게 시상하는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이 있다.

법에 의거 수여하는 태권도계의 정부포상으로는 이번에 신설된 태권도대사범제가 유일하며, 타 분야에는 훈장에서부터 표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포상제가 있다.

태권도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단증을 보유하면서 태권도 발전의 기여도와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정부에서 지정하여 명예를 부여하는 태권도대사범제와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법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타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제도’, ‘대한민국명장’ 등이 있다.

외국에서 태권도대사범제와 같은 운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스포츠, 무예를 비롯하여 요리,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전반을 조사 범위로 확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결과 태권도와 같은 무예부분에서는 일본의 ‘무술공로자표창’제도와 중국의 ‘중화무림백결’제도 등의 미흡하나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법에서 규정한 태권도대사범제와 같은 직접적인 사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스포츠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대사범제가 태권도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단증을 보유하면서 태권도 발전의 기여도와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

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부여하여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유사 제도를 검토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유사 제도 사례 분석은 태권도 분야에서 법에 규정한 태권도대사범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나 정부 포상제 및 다른 분야의 명인·명장제 등을 포함한다. 유사 제도 입법 사례에서는 유사 제도 사례분석을 토대로 각 제도의 입법 조문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문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 운영과 입법 조문의 사례분석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표 선정과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제2절 유사 제도 분석

1. 국내 유사 제도

1) 정부서훈제도¹⁾

정부서훈제도는 「상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말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었으며,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함을 원칙(제2조)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수여하는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제3조)한다.

여기서 포상은 상훈(賞勳)과 같은 의미로 서훈에 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며, “서훈”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고, “훈격(勳格)”은 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한다.

1) 정부포상업무지침(2020)에서 재구성

가) 정부 서훈의 종류

「상훈법」에 따르면 정부 서훈은 훈장과 포장으로 나뉜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12종류이다. 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장은 훈장에 다음 가는 훈격으로 훈장과 같이 12가지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훈 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 장
	등급없음					
무궁화대훈장	수여대상 : 대통령 ·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건국훈장	수여대상 :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국민훈장	수여대상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학술분야 유공자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무공훈장	수여대상 :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근정훈장	수여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 · 예비군포장
보국훈장	수여대상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광화대장, 광화장	흥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수교훈장	수여대상 :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여대상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새마을훈장	수여대상 : 새마을운동 유공자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문화훈장	수여대상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체육훈장	수여대상 : 체육발전 유공자					
	창조장	혁신장	응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 포장
과학기술훈장	수여대상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개인표창 수장			단체표창 수치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		

나) 운영 방침

정부포상업무지침(2020)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者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정부포상의 계획과 기준 마련

- 정부포상은 포상 대상(분야)의 전반적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의 목적에 맞게 후보자 선발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추천기관의 포상 총괄담당자는 추천기관 내에서 여러 포상들 사이에 기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선정 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포상 후보자를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현장·일선 근무자·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 지양
- 또한, 드러나지 않게 사회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한 국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의 잘못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된 포상은 규모 감축 및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추천기관에게는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규모 협의시 별칙(전체 규모의 10% 이상) 부여 가능
 - 추천기관은 포상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엄정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의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3년마다)으로 확인
 - 추천기관은 훈·포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정부포상의 취소 요청
 - 추천기관은 내부 인사 및 감사부서 등 주요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천한 포상후보자가 포상자로 확정되기 전까지 추천제한 사유 발생 여부를 살펴야 하며, 추천제한 사유 발생 발견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수여보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계획포상제 및 포상총량제 운영을 통한 포상규모의 적정성 유지
- 정부포상은 계획포상의 범위 내에서 운영, 수시포상 최대한 억제
- 유사·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정부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당해 연도의 정부포상대상 결정
 - 계획포상 대상으로 결정된 포상의 규모는 해당 포상예정일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협의 요청

○ 유사 및 중복 포상 통합 운영

- 추천기관은 포상분야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포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포상분야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노력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과 정부시상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포상과 시상을 적정하게 연계 운영

③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 국정시책과 연계 운영

- 정부 포상 및 시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국정 시책과 연계 운영
- 추천기관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적극 발굴하여 추천

④ 국민중심의 정부포상 운영

○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 운영
-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우편 또는 기관방문 등을 통해 상시 추천 접수

○ 국민 참여기회 보장

- 추천기관은 각종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 시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고, 포상 후보자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⑤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 귀감 홍보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상자를 각급기관·단체의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 실시

○ 직접 수여 원칙

- 서훈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라 전수권자가 직접 수여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되, 이 경우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 있게 행하여야 함
-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전달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다) 포상 기준

정부포상업무지침(2020)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포상 기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포상업무지침(2020)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이유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태권도 9단증을 취득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① 포상시기

-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각종 기념일 등 연례적인 포상이 중복되거나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②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 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2가지 사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단,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업무지침(2020)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한사항 확인

○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포상일정을 감안하여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관련 추천제한, 공정거래 관련 추천제한, 임금체불주 추천제한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해당업무 소관 부처에 의뢰하여 일괄조회하고,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는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에서 확인

- 경찰청에 정부포상 대상자들(서훈 및 표창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경우 조회범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포상규모의 1.5배수 범위(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일 경우 2배수 범위) 이내"로 함

- 세금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② 후보자 공개 검증

-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추천기관에서 발굴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추천기관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 이 경우, 포상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후 후보자 명단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포상 후보자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와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념
-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적심사 시 공개검증 결과와 추천기관의 의견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로 제출
-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검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여부를 최종 결정 가능
 - 추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천 제외 가능

③ 후보자 공적내용 현장 확인 등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여 후 수상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져 정부포상이 취소되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내용 철저 확인
-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 포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은 현장 확인과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 합동확인 요청 가능

④ 공적 심사

- 추천기관은 소속·산하 기관, 협회·단체 등에서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였더라도, 상훈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 추천기관이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받는 경우,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받아 산하기관·협회·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 포상 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공적에 관계없이 '나뉘먹기' 또는 '연공서열'에 따라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기능)

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 적정성 및 추천(훈격 포함) 의결
3. 서훈 또는 정부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심사
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부기관장) 임명 원칙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5. 추천권자는 간사와 서기 임명 가능

(자격)

1. 공무원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2. 민간 위원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다.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결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임기)

1.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임 가능
2. 공무원 위원 중 직위로 지정된 경우 해당직위 재임기간

(운영)

1. 위원회는 추천권자의 요구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2. 추천권자는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 요구
3.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작성

(제척)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대상 공적 또는 포상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회피)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효과)

추천권자는 서훈 또는 정부표창 추천시 위원회 심사결과 존중

(보안)

위원은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외부 누설 금지

마) 정부포상의 취소

정부포상업무지침(2020)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포상의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시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음(정부표창규정 제19조)
 - 퇴직포상은 “추천 당시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포상을 받게 된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취소 가능
 - 재직공무원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이후 수여받기 전까지 “감사 조사, 수사,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의 추천 제한요건이 발생하면 추천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취소 가능

② 절차

- 당해 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 추천권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정부포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부포상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권자가 요청한 정부포상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포장 등 수훈자의 범죄경력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부포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수훈자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포상 취소 추진 가능

③ 사후관리

-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포장, 수장·수치 또는 표장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

④ 관보게재(정부포상 취소 공표)

- 대상 : 취소가 확정된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내용 : 포상명, 수상자 소속·성명, 훈격, 취소사유, 취소일
- 시기 : 포상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방법 : 추천기관에서 관보 게재 의뢰문서를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및 상훈담당관실로 송부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문서로써 취소사실 별도 통보
- 공표제외 가능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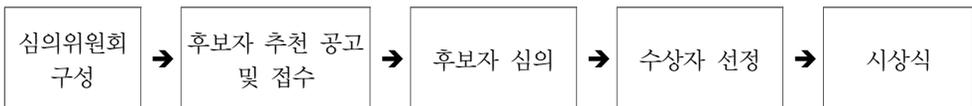
2) 태권도계 유사제도

가)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은 국기원에서 주관한다. 이 상은 국내외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국기원, 2019).

이 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 : 국기원
- 목적
 - 국내외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태권도인의 자긍심 제고
 - 세계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
- 대상 : 포장과 포상의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상자 지정
- 포장 : 국기장, 진인장, 문화장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 포상 : 지도자, 선수, 심판, 심사, 교육, 연구, 경영, 창조, 봉사, 문화, 특별 등 11가지 영역으로 구분
- 경과 : 200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시상
- 선발 : 추천, 심의제
- 지정 절차



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선정 사업

이 사업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주관한다. 이 사업은 태권도의 보급,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적을 남긴 인사들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로 선정하고 태권도 공원의 별도 전시 공간에 현역하게 하는데, 이는 선정된 현역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존하여 태권도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이다(태권도진흥재단, 2020).

이 사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 없음. 다만,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선정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2012.02.28.)하여 운영
- 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 목적
 - 태권도의 보급,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적을 남긴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전시 공간에 현역
 - 선정된 현역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존하여 태권도인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 대상
 - 태권도의 수련, 교육, 진흥, 보급 및 기술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인사
 - 태권도 발전의 기여도와 인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사
- 경과 : 2014년 시행 ~ 현재 (2년 주기 시상)
- 선발 : 추천, 심사제



3) 기타 분야 유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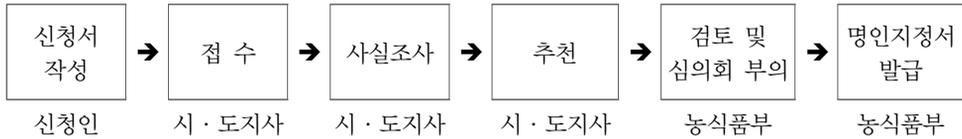
가) 식품명인제도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제도이다. 전통식품과 전통식품 외의 일반식품 등 두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0명이 명인으로 지정(작고한 7명은 명인 자격 해제)되었으며, 그 분야는 주류, 차(茶), 김치, 엿, 고추장, 비빔밥, 홍삼, 식초, 장류 등이다(한국식품명인협회, 2020)

이 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 주체 : 사단법인 한국식품명인협회
- 목적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등의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대상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 종사하고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선발 : 신청, 심사제
- 지정 절차



○ 혜택

- 명인지정서 발급
- 명인 지정 후 본인이 생산한 제조·가공·조리 등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명인인증 표지와 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게시 가능
-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기능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명인이 보유한 기술들을 전수·기록·보존할 수 있음
-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대한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 식품 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거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0).

이 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 주체 : 고용노동부
- 목적
 -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과 동시에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 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한민국명장을 선정 및 우대함으로써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은 물론 능력위주의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함
- 대상
 - 37분야 97직종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선정 절차 공고일 기준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 자격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신청 직종 개선실적 등)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대외활동,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 선발 : 신청, 심사제
- 선정 절차



○ 혜택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 수여(대통령 명의)
- 일시장려금(2천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 직종 지속 종사 시 계속 종사장려금 지급(연간 1회)
- 창업 및 네트워크 지원

2. 해외 유사 사례

태권도대사범제와 같은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스포츠, 무예를 비롯하여 요리,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전반을 조사 범위로 확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 결과 태권도와 같은 무예부분에서는 일본의 무술공로자표창제도와 중국의 중화무림백걸 제도 등의 미흡하나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범위를 넓혀 무예 이외의 영역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면, 영국은 자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큰 영연방 국민을 대상으로 요리, 미술, 음악, 무용, 대중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명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음악 및 요리분야에서 명인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 수공업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 기술인에게 마이스터(Meister)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중 태권도 대사범제도와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무술공로자표창

무도(武道)가 발달한 일본이지만 일본의 무도는 우리나라의 무예처럼 법률상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무형문화재는 대신 전통예능, 전통공예 등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이에모토(家元)제도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특히 무도는 오랜 기간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 정책상의 제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및 전통적 건조물 등 6개 영역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나 무도의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속하는 문화재 형태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무도협의회에서는 일본 무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무도협회의 무술공로자표창(武道功勞者表彰)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무도관, 2020).

- 법적 근거 : 없음
- 주체 : 일본무도협회
- 목적
 - 일본 무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무도의 계승발전 유도
- 대상
 - 일본무도협회에 가입한 10개의 무도 단체 중에서 무술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매년 각 1명 선정
- 특징
 - 무술공로자표창은 일본 무도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인식되며, 상장 및 휘장(무술공로장) 수여 및 수상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창 플레이트가 일본 무도관에 현액

2) 중국의 중화무림백걸

중국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공약’이 통과되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단과 대표 전수자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무예 중 국가기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인제도는 우수 분야이며, 우수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전수자 관리에 관한 법규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로서 보존 및 계승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체육위원회 우수운동관리센터와 중국우수협회에서는 전국 우수인을 대상으로 교수, 명사, 코치, 운동선수 등의 분야별 명인을 선발·발표하는 등 중국 내 우수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중화무림백결(中華武林百杰) 선정 사업이다. 중화무림백결 선정은 1995년에 국가체육위원회와 우수운동관리센터, 중국우수협회에서 전국 우수인 중 각 분야 각각 10명의 대표 교수를 선발하였다.

중국의 중화무림백결(中華武林百杰) 선정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 전수자 관리에 관한 법규 등
- 주체 : 국가체육위원회 우수운동관리센터, 중국우수협회
- 목적
 -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황목 대표성 전승인 인정과 관리
- 대상
 - 전국 우수인 대상으로 교수, 명사, 코치, 운동선수 등의 분야별 명인 100명 선발
- 특징
 - 전통무술분야 전수자 대상 10대우수명사 선발
 - 전국대학 우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10대우수교수 선발
 - 스포츠경기 종목으로서의 우수분야 코치 대상 10대우수코치 선발
 - 스포츠경기 종목으로서의 우수분야 선수 대상 10대우수스타 선발
 - 이렇게 선발된 10대 우수 명인과 전국 주요 지역의 전수자 및 주요체육대학 우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100명의 우수인을 추가 선발하여 중화무림백결

칭호 부여

- 혜택 : 중화무림백걸 칭호 및 증서, 상패 부여하고 개인별 우수 시연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 제작하여 우수 홍보에 활용

제3절 입법 사례 분석

1. 유사 제도 입법 사례

1) 상훈법의 정부서훈제도

정부서훈제도는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말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 한다. 여기서 “서훈”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훈장, 포장제도를 포함하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상훈법에 따른 정부서훈제도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서훈 관련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	

법률	시행령
<p>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p> <p>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심사를 거쳐야 한다.</p>	<p>제2조(공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직심사위원회(이하 "공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p>② 공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법률	시행령
	<p>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p>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p>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p>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궁화대훈장 2~12. 이하 생략 	
<p>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법률	시행령
1. 건국포장 2~12. 이하 생략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의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관련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삭제<2020. 2. 18.></p> <p>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p> <p>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p> <p>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p> <p>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p> <p>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p> <p>⑦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⑨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⑩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⑪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령〉</p> <p>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p>	<p>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p> <p>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3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9. 해당 식품의 산업성 <p>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주소(시·군·구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조리·가공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p>	<p>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p> <p>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p>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5조 관련)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항목	분야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25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20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15
나. 우수성	〈평가 생략〉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25
			B.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20
			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15
다. 정통성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마.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C.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바. 산업성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5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사. 윤리성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3) 숙련기술장려법의 대한민국명장 지정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식명장은 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지정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명장 지정관련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기업부 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p><공고 내용 참조></p> <p>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부 장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2. 전담기관 지정 입법사례

일반적으로 전담기관이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8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전담기관 지정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99개에 이른다. 법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노인복지법, 말산업육성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고 시행령으로는 공연법시행령, 국제문화교류진흥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과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담기관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제4항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춘 기관,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p>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었 <p>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2) 공예문화산업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담기관에서는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또한 제4항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p>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3) 국제문화교류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전담기관에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 법 제5항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8조에서는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전담기관 지정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문화교류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p> <p>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²⁾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 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4)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서는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에서는 “문화이용권

2) 1인창조기업법(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등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도 있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고 전담기관을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관리,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법령의 전담기관 지정 입법 조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p>	<p>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총괄 2.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4.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의 이용 활성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p> <p>6.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p> <p>7.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p> <p>8. 그 밖에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p>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 유사 제도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 중 본 연구주제인 태권도대사범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는 정부서훈제도,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일본무도협회의 무술공로자표창, 중국의 중화무림백걸 등이 있다.

이들 사례 중 정부서훈제도는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말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훈장, 포장제도를 포함하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정부서훈제도는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훈을 수여하는 것으로 태권도법에 규정한 명예제인 태권도대사범 지정제도와 가장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부서훈제도는 제도 운영 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어도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계성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계에 종사한 사람이 상훈법에 의한 정부서훈을 받고자 한다면 상훈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이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정부서훈제도에 비해서는 격이 낮으나 태권도계에 존재하는 유사사례로는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태권도 관련한 포상제도이기는 하나 태권도 단체들의 후보자 추천 폭이 넓지 않고, 주관 주체의 관계자들에게 편중되어 있거나 후보자 추천 및 심의, 수상자 검증 과정의 객관적 기준 미비로 공정성 시비가 잦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선정제도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의 명확화 등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국내 유사 사례로 살펴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태권도대사범 제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명인이나 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대사범제와 유사하다. 즉,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나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를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명장은 선정하고자 하는 직종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선정 절차 공고일 기준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를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태권도대사범이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증을 보유한 자(태권도법 21조의 2 제1항 제1호)를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무도협회의 무술공로자표창, 중국의 중화무림백걸 선정 등의 해외사례에서는 해당분야에서 공헌한 사람을 선정하여 명예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태권도 대사범제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제도 운영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2. 입법 사례

1) 유사 사례 입법

앞에서 살펴본 정부서훈제도나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들은 태권도 대사범제처럼 모두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정부서훈제도는 상훈법에 근거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제는 식품산업진흥법, 대한민국명장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한다.

정부서훈제도는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말하는데 이 법은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수여하며, 제3조에서는 공적의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훈 취소와 관련하여도 상훈법 제8조의 서훈의 취소 등에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i)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ii)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iii)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3항에서 취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9항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하위법령에서 취소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정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평가방법에서 ‘사항목으로 윤리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식품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우수인 경우 5점, 보통인 경우 2점을 부여한 반면에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0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대사법의 윤리성 기준 설정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명장 지정과 관련하여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정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공고문에는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시행령 제21조 제6항)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항목 또한 배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심사항목으로 사회봉사활동 실적(최대 5점)과 면접심사(적부 판정)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태권도대사법의 소양 및 인성 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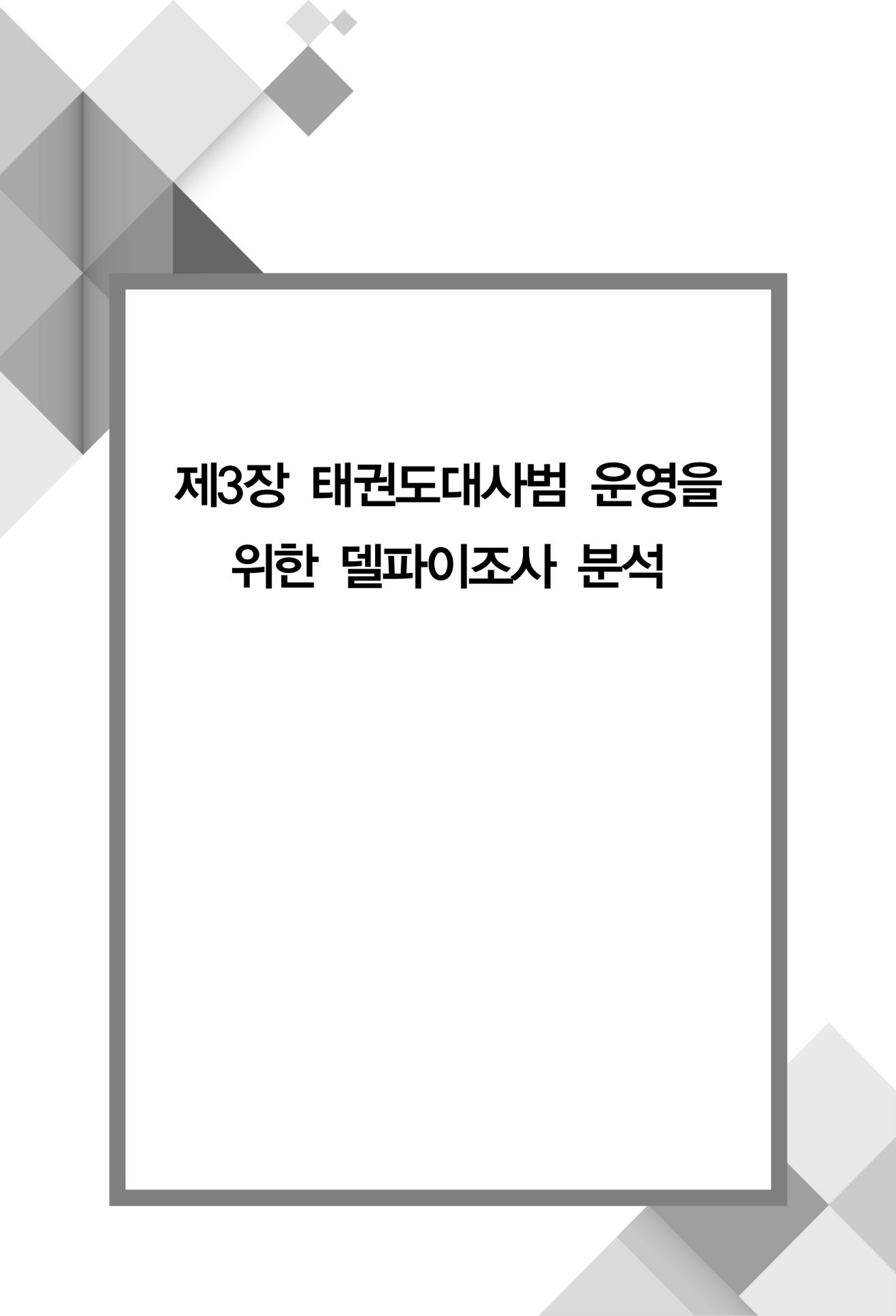
2) 전담기관 지정 입법 사례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8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령내용을 살펴보았다. 4개의 개별법 중 문화예술진흥법에서만 전담기관을 시행령(제23조의4 제1항)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법률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 요건으로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문화교류진흥법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이거나 법인 또는 단체 외에 요건을 갖춘 개인도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하고 있으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른 분야의 전담기관 지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하는 요건을 설정할 때 앞의 사례에서 설정한 것처럼 공공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와 같이 특정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은 국내에 태권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복수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기능이 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기능(서류 접수 및 정리, 지정위원회 업무 지원 등)으로 한정적일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지정방식보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와 같이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지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제3장 태권도대사범 운영을 위한 델파이조사 분석

제3장 태권도대사범 운영을 위한 델파이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및 선정을 위해 국내외 태권도 이해관계자와 해당 단체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본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설정과 지정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대사범제 선정지표의 명료화와 객관적 선정기준을 위한 준거의 틀로 활용하고 제도의 방향성과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분석 방법인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였다.

제2절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전문가 조사 대상은 태권도관련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즉, 태권도관련 학계, 태권도 현장 전문가(도장경영), 태권도 국내외 단체 실무자 등 전문가 20인을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문가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번호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경력
학계	1	김00	00렛대학교	교수	18년
	2	김00	0인대학교	교수	26년
	3	송00	0희대학교	교수	20년
	4	이00	0명대학교	교수	25년
	5	이00	0주대학교	부교수	30년
	6	박00	0경대학교	부교수	12년

구 분	번호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경력
	7	임00	0인대학교	교수	20년
	8	곽00	0천대학교	조교수	25년
	9	조00	0희대학교	교수	20년
	10	김00	0천대학교	교수	20년
	11	김00	0석대학교	조교수	13년
	12	최00	0한대학교	교수	46년
지도자	13	고00	전라북도	지도	30년
	14	장00	도장경영	지도	28년
	15	이00	도장경영	지도	13년
	16	최00	도장경영	지도	16년
	17	손00	인터네셔널스쿨(중국)	지도	15년
단체 (기관)	18	강00	00태권도연맹	전문위원	16년
	19	김00	00연구원	책임연구원	13년
	20	이00	00원	팀장	20년

2. 조사절차

델파이 기법은 미래사건에 관한 식견 있는 견해를 획득하고 개발하는 판단적 예측분석 방법으로 태권도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의견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질문지를 통해 총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태권도대사범제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적인 견해를 깊이 있게 도출해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질문지를 통해 각 항목에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구성한 질문지를 패널들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다. 2차 조사에는 앞서 실시된 i) 태권도대사범 자격요건 중 ‘국내외 보급기여 범주’, ‘윤리성 범주’,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범주’ ii)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전담기관 지정관련 내용으로 ‘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운영 전담기관 지정절차’ iii)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내용으로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제안이나 향후 운영에 대한 방향성 항목으로 1차에서

개선하지 못한 구체적 방안이나 추가의견 들을 수렴하였다.

3차 조사는 2차 질문지를 통해 각 항목에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전달하여 최종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태권도대사범 자격요건

1) 국내외 보급기여

태권도대사범 자격여건 중 ‘국내외 보급기여 범주’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2).

표 3-2. 국내외 보급기여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견	중요도 순위(값)
국내외 보급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를 통한 사회적 공헌과 봉사활동 업적 자 - 각 국가별 태권도 전파자 -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가 - 해외태권도 파견사범 근무경력자 - 사회적 소외계층 무료봉사(국내외) 및 개도국 태권도 확산에 기여한 자 	1(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연도 기준 경력을 최소한 구비한 자 - 30년 이상 태권도 수련자, 공인 9단 이상인 자 - 20년 이상 태권도 기술개발과 연구에 기여한 자 - 20년 이상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 - 10년 이상 국내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방안수립에 기여한 자 * 위의 조건 중 3개 이상 충족 자 	2(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관련 기술체계개발 및 연구업적 자 - 태권도관련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 수행자 - 태권도 기술(신체적, 정신적)개발에 공헌한 자 - 태권도 교본 및 콘텐츠(미디어)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자 	3(3.85)

항 목	의견	중요도 순위(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후학양성 기여 및 보급자 -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사범 및 관장. - 해외태권도 지도자 보급 및 태권도보급 문화발전에 기여 한 자 	4(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외국인 - 세계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으로서 태권도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한 자 	5(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 태권도 보급을 위한 기여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위를 선양한 태권도 우수선수 양성 자 - 우수선수경기실적(겨루기, 품새, 시범)자 및 우수 엘리트 지도자 	5(3.70)

전문가들은 '태권도를 통한 사회적 공헌과 봉사활동 업적을 가진 자'를 태권도대사범 국내외 보급기여 범주에 대한 자격요건 1순위(4.35)로 응답하였다. 2순위(4.15)는 적정 연도 기준 경력을 가진 최소한 구비 자(30년 이상 태권도 수련자, 공인 구단 이상인 자, 20년 이상 태권도 기술개발과 연구에 기여 한 자 등)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태권도 관련 기술체계개발 및 연구업적 자(3.85), 일선 후학양성 기여 및 보급자(3.80), 세계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외국인(3.70)과 엘리트 태권도 보급을 위한 기여자(3.70)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윤리성 범주

태권도대사범 자격요건 중 '윤리성 범주'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윤리성 범주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 견	중요도 순위(값)
윤리성	승부조작(도핑), 도박, 입시비리, 연구윤리/인권관련 문제 사항이 없는 자	1(4.70)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및 채용비리 사항이 없는 자	2(4.60)
	고의적 비위 등에 의한 법적처벌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민원이 없는 자(대사범으로서 귀감, 봉사, 책임을 다하는 자) 사회 전반적인 활동으로 태권도를 통한 기부 및 공헌활동을 꾸준히 참여활동 한 자	3(4.55)
	국민의 4대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없는 자	4(4.50)
	공무원법 33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5(4.45)
	사회통합을 방해하거나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은 자 태권도 발전 및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거나 윤리적 행동에 벗어나 언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나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회공동체와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은 자	6(4.35)

전문가들은 ‘승부조작(도핑), 도박, 입시비리, 연구윤리/인권관련 문제 사항이 없는 자(4.70)’를 윤리성 기준의 중요도 1순위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및 채용비리 사항이 없는 자(4.60), 고의적 비위 등에 의한 법적처벌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민원이 없는 자(4.55), 국민의 4대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없는 자(4.50), 공무원법 33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4.45) 그리고 사회통합을 방해하거나 민주주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은 자(4.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그 밖의 자격범주 사항

태권도대사범 자격요건 중 ‘그 밖의 자격범주 사항’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그 밖의 자격범주 사항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 견	중요도 순위(값)
그 밖의 사항	폭력/성추행(성폭력) 등의 사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없는 자	1(4.75)
	음주, 뺑소니, 뇌물 수수 등 사항이 없는 자	2(4.70)
	태권도 관련 민형사상 위법사항이나 금고이상의 처벌 사항이 없는 자	3(4.60)
	일반정부포상 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위배하지 않은 자	4(4.50)
	태권도관련 기관(단체)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힌 이력 또는 동조 사실이 없는 자	5(4.35)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물의를 야기한(부정적 내용이 거론된) 이력이 없는 자	5(4.35)

전문가들은 ‘폭력/성추행(성폭력) 등의 사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항이 없는 자(4.75)’를 그 밖의 자격범주 사항의 중요도 1순위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음주, 뺑소니, 뇌물 수수 등 사항이 없는 자(4.70), 태권도 관련 민형사상 위법사항이나 금고이상의 처벌 사항이 없는 자(4.60), 일반정부포상 지침에 근거하여 이를 위배하지 않은 자(4.50), 태권도관련 기관(단체)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힌 이력 또는 동조 사실이 없는 자(4.35)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물의를 야기한(부정적 내용이 거론된) 이력이 없는 자(4.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전담기관 지정

1) 지정 기준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5).

표 3-5. 전담기관 지정(지정기준)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견	중요도 순위(값)
지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대사범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은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하며 태권도관련 제도권 단체 관계자 및 문체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인사는 배제하여 별도의 태권도대사범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협업 산하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태권도 단체를 만들어 운영관리 하는 것 보다는 기존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 국내외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목표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대사범운영 전담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협업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함 - 다만 위원선정은 외부위원으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2개 단체(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지정 	2(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부 관리감독 하에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에서 운영관리 함. 사범교육(3,2,1급)을 시행하고 있는 기존 국기원의 기능을 볼 때 단증을 발급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기원이 적합 	3(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진흥재단 산하 가칭 '태권도전통보존회'를 설치하고 태권도원에 태권도전통보존회를 태권도대사범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이는 수련환경, 시설활용, 국내외 수련생 방문 등 운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운영관리 감독 용이 	4(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산하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 및 비영리단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및 심의의 투명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기관이나 단체 배제 -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독으로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시 학연, 지연, 정파, 정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상당 	5(3.20)

전문가들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심의위원회 설치(4.00)'를 전담기관지정에 관한 중요도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심의위원은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하며 태권도관련 제도권 단체 관계자 및 문체부를 포함한 정부기

관 인사는 배제하여 별도의 태권도대사범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협업 산하 위원회 구성(3.60), 국기원(3.50), 태권도진흥재단(3.30)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 및 비영리단체 설립(3.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지정 절차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전담기관 ‘지정절차’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6).

표 3-6. 전담기관 지정(지정절차)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목	의견	중요도 순위(값)
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단체 지정(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 문체부장관이 태권도법에 명시된 2개 단체(제19조 국기원,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를 지정하고 장관이 태권도대사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전담기관 지정 	1(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역할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제도 및 절차 벤치마킹 - 인간무형문화제 지정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 벤치마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 등 유사단체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용 	2(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단체나 기관을 배제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대사범운영 전담기관 지정(선정) 	3(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공모를 통한 운영 전담기관 지정 -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후보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평가 기준에 의해 공식화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은 투명성 있게 선정)을 통한 전담기관 지정 	4(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관련 단체의 추천 후 태권도인들이 직접투표(온라인) - 추천 후보기관에 대해 태권도지도자를 포함한 태권도인들의 투표를 반영하여 태권도대사범 운영지정기관에 대한 공신력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추구 함 - 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절차가 담보되어야 함 	5(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태권도관련 단체 자체 대사범제 운영 - 독립적으로 1개 기관으로 대사범제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태권도 단체마다 대사범을 배정하여 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 사업을 함께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사범에 대한 역할론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6(2.55)

전문가들은 지정절차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1순위(3.55)로 2개 단체 지정(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이라 응답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태권도법에 명시된 2개 단체(제19조 국기원,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를 지정하고 장관이 태권도대사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높게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사역할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제도 및 절차에 대한 벤치마킹(3.50),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 단체나 기관을 배제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대사범 운영 전담기관 지정/선정(3.40), 자유공모를 통한 운영 전담기관 지정(3.35), 태권도 관련 단체의 추천 후 태권도인들이 직접투표(온라인)(3.00), 그리고 각 태권도관련 단체 자체 대사범제 운영(2.5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운영에 대한 기타 제안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 중 ‘새로운 제안’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7).

표 3-7.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 건	중요도 순위(값)
대사범제 운영에 대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범 전담기관이 수행할 임무 태권도법에 명시화 -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선행유사(무형문화재법-개인종목)제도를 참고하여 대사범 전담기관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에 관하여 ‘태권도법’에 명시 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1(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범에 대한 용어 개정 - 대사범이라는 용어가 공모를 통해 최종 선택되었지만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후학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추후 용어 정의와 대사범 용어에 대한 명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 개정이 요구됨 	2(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단 자격조건 완화 - 제21조 1항 ‘국기원 승단시험을 거쳐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에 대한 항목 자격조건 완화(태권도 글로벌을 위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과 자부심이 되어야 하나 국기원 9단 소지자는 전 세계 10%미만 임,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대사범으로 전략 가능) 	3(3.55)

항 목	의 견	중요도 순위(값)
	- 태권도 보급과 기여차원에서 9단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범의 범위를 넓혀 대사범의 다양성과 실효성을 거둘 필요가 있음	
	○ 국가별/지역별 태권도대사범 지정 - 소수의 인원만 지정하는 획소성과 영예보다는 다수의 대사범을 지정하여 태권도단체별 목적사업 달성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국가별/지역별 대사범을 지정하여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3.40)
	○ 대사범 선정 인원 제한 또는 등급제 도입 - 사회적 존경과 가치부여 차원을 위해 대사범 칭호가 남발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대사범 선정인원을 제한하거나 대사범 등급(예: 태극, 고려, 태백), 또는 10대 명인, 50대 명인, 100대 명인으로 등급제를 도입하여 대사범 운영 관리의 효율화 추구	5(3.35)
	○ 대사범 선정에 대한 영역별 평가(겨루기, 품새, 시범, 격파, 호신술)마련 - 태권도대사범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영역별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본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영역별 대사범제도 확대 적용	5(3.35)
	○ 70세 이상과 사망자도 포함 - 70세 이상인 자, 고인의 경우도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무주 태권도원에 추모공원 설립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자량이 되어야 함	6(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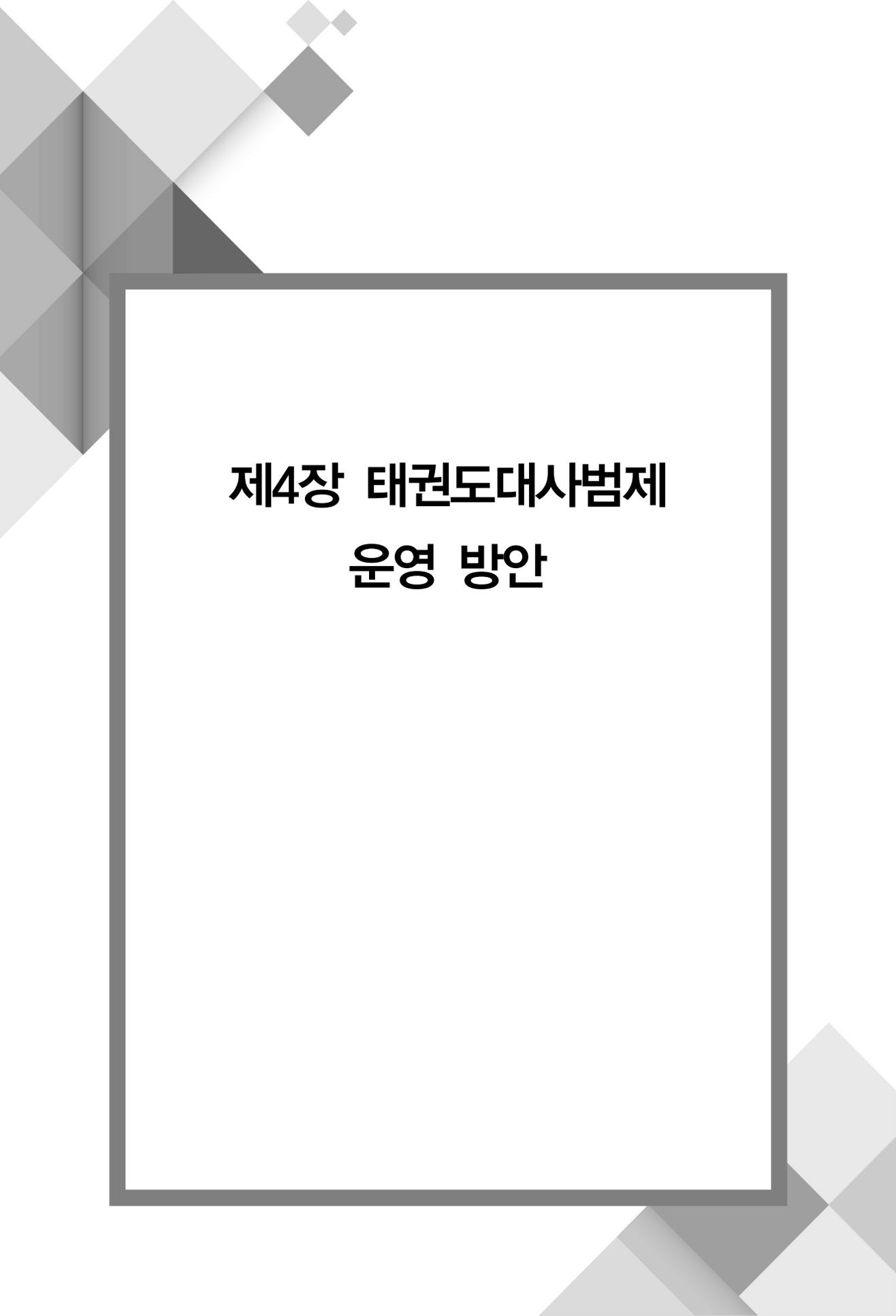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으로 ‘대사범 전담기관이 수행할 임무 태권도법에 명시화(3.95)’를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에 관하여 태권도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사범에 대한 용어 개정(3.85), 9단 자격조건 완화(3.55), 국가별/지역별 태권도대사범 지정(3.40), 대사범 선정 인원 제한 또는 등급제 도입(3.35)과 대사범 선정에 대한 영역별 평가(겨루기, 품새, 시범, 격파, 호신술)마련(3.35) 그리고 70세 이상과 사망자도 포함(3.25) 등의 순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이외에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 중 ‘향후 운영에 대한 방향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8). 즉, ‘대사범 선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지속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확보(4.65)’가 전문가 의견 항목의 중요도 1순위로 응답하여 태권도 계승과 진흥을 위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안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대사범 선정 및 역할 등에 대해 전 세계태권도인에게 공감대와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정된 대사범에 대한 역사적 기록화(4.65), 지정된 대사범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부여 방안 마련(4.20), 태권도 인간문화재 등록(3.80) 그리고 태권도대사범 연금혜택 제도 도입(3.70)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8. 태권도대사범제 운영방안(방향성)에 대한 의견 중요도 순위

항 목	의 견	중요도 순위(값)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범 선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지속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확보 - 태권도 계승과 진흥을 위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안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대사범 선정 및 역할 등에 대해 전 세계태권도인에게 공감대와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함 	1(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대사범에 대한 역사적 기록화 - 대사범 권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물담, 교육담 등의 사실을 기록화하고 인물 스토리화하여 태권도 보급 및 후학계보로 활용하고 적용하여 태권도 역사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 	1(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대사범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부여 방안 마련 - 단순히 대사범 지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와 공감, 수용할 수 있는 대사범의 역할과 가치, 태권도의 기술과 기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예: 태권도 지도 및 역할부여 : 이수, 전달, 명인) 	2(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인간문화재 등록 - 태권도대사범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많은 분들이 대사범으로 선정되고 제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사범 중 1명을 선출하여 인간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함 	3(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대사범 연금혜택 제도 도입 	4(3.70)



제4장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방안

제4장 태권도대사법제 운영 방안

제1절 태권도대사법 위상 명확화

태권도대사법 위상과 관련한 근거는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는 조문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오롯이 명예만이 부여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법 지정 관련 일련의 사업에서도 법에 부여된 태권도대사법 지정자에 대한 권위는 명예를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기준은 엄격하고, 지정 과정은 명확해야 하며,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된 사람이 태권도계나 주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익제기 등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심사기준과 관련한 윤리성 기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를 통틀어 명예직이 갖는 최고의 엄격성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 과정 역시도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태권도단체가 참여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직접 가칭 ‘태권도대사법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칭 태권도대사법 지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정위원회 구성 역시도 각계의 추천과 자천격인 공모를 병행하여 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적조서나 각종 업적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나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개 검증에는 지정위원회의 위원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태권도대사법에 대한 명예를 강화하여 모든 태권도인이나 관계자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제2절 태권도대사범 지정지표 개발

태권도대사범 지정지표는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자를 절대 범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전제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에 대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서는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대상자를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생존자만 할 것인지 사망자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지정과 관련하여 매년 지정할 것인지 지정할 경우 몇 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정범위에서부터 지정 지표 및 지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지정 범위 설정

1) 지정 대상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태권도 대사범의 지정 등”과 관련한 법 조문에 근거한다. 이 법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를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한 대상자 범위는 법에서 명시한 다음 3가지 조건 중 태권도법 제21조의2제1항 1호에서 규정한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할 것”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2020년 5월 기준 1,072명(국내 870명, 해외 202명)이다.

이와 더불어 법에서 규정한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태권도의 승단에는 일반적인 내부 규율이 있다. 즉,

하위 단에서 상위 단으로 승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련하고 승단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승단 과정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1단에서부터 승단을 시작한 사람은 최소 1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9단까지 가장 빨리 승단할 경우에도 53세 이상까지 최소 38년이 소요되며, 15세 미만에서 1품부터 시작한 사람도 9단까지 승단할 경우에도 53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에 대한 검증을 위해 태권도법에서 정한 태권도대사범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최초의 승품단 보유 시부터 9단증 보유 시까지 일체의 승품단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서 국기원을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태권도대사범 지정 대상자는 국내외 태권도인 모두를 포함하고 생존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정은 현존하는 것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정을 조사한 다음 어떤 것에 특별한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유사사례에서도 생존자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명인 또는 명장 등으로 지정 또는 선정되는 사람의 경우도 사망할 경우 지정 또는 선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태권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면 명예 태권도사범으로 지정 대신 추서는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근거는 태권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지정자 수 및 연차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유사 사례를 보면 ‘자랑스런 태권도인 상’은 대상 3개 영역을 포함 지도자, 선수 등 13개 영역에서 1인씩 선정하여 매년 수여하며,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선정 사업은 2년 주기로 선정하나 선정자 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식품명인 및 대한민국명장 선정 역시도 선정 분야는 정해져 있으나 선정주기 및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는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수도 심사에

따라 통상 1인이 선정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무술공로자표창은 일본무도협회에 가입한 10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각 단체마다 1인씩 선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중화무림백결은 1995년에 특별사업으로 전국 우수인을 대상으로 100인을 선정하였으며 그 후로는 더 이상 선정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지정 연차는 매년 시행하거나 2년마다 한번 또는 특정 연도에 1회에 한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정자 수는 분야별 1명이거나 통틀어 100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분야별 선정은 기준에 이미 분야가 명시된 것에 의하며, 지정자 수는 연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1회에 1명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지정 분야가 법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았으므로 시행자의 재량으로 지정 연차와 지정자 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은 단일분야로 매년 1인씩 지정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선정 사업처럼 2년 주기로 1회차에 2명 이내의 태권도대사범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태권도대사범 제도가 명예직으로서 지정 여부가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태권도법의 규정에 있어서도 제21조2의 제1항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임의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태권도대사범의 희소성 강화를 통한 지정자 명예적 권위와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2. 국내외 태권도 보급 기여 지표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의 지표는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자로서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람이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실적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급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도장 등을 통하여 태권도 전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선수 및 학생지도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후학을 양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장 등을 통한 전수 후학 양성보다는 대학 등 교단이나 연구소 등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후학을 양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장소와 방법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방식을 어떻게 구분하여 평가하고 배점할 것인가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태권도대사범은 현장에서 평생 수련하며 후학을 양성한 사람으로서 수련을 통한 후학양성 보급 지표 외에 논문 등 연구실적물을 지정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태권도 9단증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사범들 중에서 보급 기여가 탁월한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장 등에서의 수련생 등 태권도 후학을 양성한 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누적 데이터 등의 한계로 후학 양성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20년 5월 국기원에서 게시한 내부자료를 통해 기준을 산출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현재 국기원에 등록된 품 및 단증 취득자는 총 10,647,075명으로 국내가 9,205,452명 국외가 1,441,623명이다. 등록된 도장수는 국내가 9,903개소이며 국외 도장수는 게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 품·단증 취득자를 제외한 국내 취득자 9,205,452명을 국내 도장수 9,903개소로 나누어 평균수를 구하고 이 값을 다시 국기원 설립 4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1개 도장 당 1년 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를 구하고자 한다.

$$\text{도장 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 = 9,205,452(\text{국내 취득자}) \div 9,903\text{개소}(\text{국내 도장수}) = 929.5\text{명}$$

$$\text{도장 1년 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 = 929.5\text{명}(\text{도장 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 \div 40\text{년}(\text{국기원 설립 주년}) = 23.2\text{명}$$

위의 산식을 살펴보면 전체 도장 9,903개소에서 지금까지 취득한 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는 929.5명이다. 이를 다시 국기원 설립 40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면 도장 1개소 당 연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는 23.2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장 1개소 당 연평균 품·단증 취득자 수는 23.2명을 기준으로 삼아 도장을 운영하면서 후학을 양성한 사람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균치를 기준점으로 활용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측정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수를 더하여 30년 이상은 1,000명, 25년 이상은 850명, 20년 이상은 700명으로 제안하였다. 이 경우 30년 이상은 연평균 33.3명, 25년 이상은 34명, 20년 이상은 35명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도장 운영 경력이 적을수록 연령적으로 젊어 혈기왕성하게 후학을 양성한다는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산술적 추론에는 사실성을 왜곡한 적잖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사범들의 후학 양성 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전산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장별 평균치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가능한 최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화하여 평균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 신청자의 도장운영 실적 증명과 후학 양성수 검증이다. 먼저, 도장운영 실적 증명을 위해서는 신청 서류에 도장 운영 이력과 더불어 관련 도장 이력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후학 양성수 검증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도장 이력에 따라 국기원에 품·단증 취득자를 검증하면 된다. 실제로 승품단 취득은 도장별로 신청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오래된 서류라 하더라도 신청 및 품·단증 발급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수련생의 도장의 등록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장의 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지도자가 지인의 아이디(ID)등을 빌려 수련생들에게 유품단 심사를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비정당성을 제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장 등에서 수련생 등 후학을 양성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즉, 태권도사범 중에는 개인 도장업을 차려 수학을 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범단을 꾸려 국내외적으로 각종 시범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 태권도를 보급한 경우도 태권도대사범 지정시 중요한 공적 지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태권도시범단 참가 활동이 태권도 보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적잖은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의 지표로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해 온 실적만을 반영하여 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태권도대사범 보급 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보 급 실 적 기 여 도	가.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50
	나.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35
	다.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20
	라.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나 본인의 ID가 아닌 차용 ID를 통해 후학에게 유품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또는 후학 양성 활동을 하면서 선수 및 수련생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0

※ 후학 양성수는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신청하여 취득한 수만 인정(지정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이 운영한 도장운영 이력 증명서류 제출 필수)

3. 윤리성 및 그 밖에 지표

태권도법 제21조의2제1항 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서의 지표는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자로서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람이 윤리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윤리성에 대한 검증 기준은 원칙적으로 정해야한 의무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하위법령 제정 시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윤리성에 대한 기준과 재량권이 부여된 그 밖의 사항 중에서는 태권도 분야에 종사한 봉사 경력 사항을 추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 밖의 사항 중에서는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봉사한 경력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태권도 현장에서 꾸준히 봉사해온 헌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가) 윤리성 등의 기준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해서 윤리성의 기준은 다른 어떠한 지정지표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무예의 일종으로서 무예종목은 전통적 전승문화를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술기(術技)와 도(道)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격투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성품을 닦고 도덕정신을 배양하며, 내적인 자아수양에 힘쓰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예의 특성은 승패를 강조하는 일반 스포츠종목과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되는 사람에게는 태권도를 통한 격투기술의 향상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성품을 닦고 도덕정신을 배양하며 내적인 자아수양에 힘쓰는 측면을 강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순수 명예부여제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 있는 명예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이 엄격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윤리성과 관련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윤리성 기준이 과할 정도로 엄격하나 아니면 일반적이냐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태권도계나 주변 관계자 등으로부터 찬사와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느냐 각종 이의제기가 나오느냐를 판가름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 평가기준으로 윤리성 기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를 통틀어 명예직이 갖는 최대한의 엄격성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성(倫理性)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행동의 규범을 지닌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성이란 말과도 유사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이 지녀야 할 윤리성이란 사람으로서 태권도대사범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 규범으로 도덕성(道德性)이라 할 수 있다. 도덕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말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판단, 즉 가치판단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 또 이 말은 윤리적인 기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와 같은 문제가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던져지는 대표적인 화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행위 되어 왔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떠한 좋은 삶을 살아 왔는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이를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평가·검증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윤리성의 평가기준을 정성적 기준과 법률적 절대 기준으로 나누어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정성적 기준으로는 ‘태권도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을 평가 지표로 하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도덕한 행위가 법적 처분을 받지 않았다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경우 부도덕한 행위 등의 누적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지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행위 되어 왔는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기

도 하다.

다음으로는 법률적 절대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떠한 좋은 삶을 살아 왔는가?’에 대한 검증으로 법률에서 태권도대사범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범죄적 행위를 한 사람은 아예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 의해서 지정되는 태권도대사범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을 받아야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비위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력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이 경우에는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결난 경우 이의제기 등 다양한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정부포상 중 일반국민 포상제의 추천제한 사항과 같은 제한 범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항에 규정된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과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하여 윤리성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둘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셋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 ②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③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④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⑤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⑥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⑦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과료(科料)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섯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항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여섯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5년간(정부포상 업무지침은 3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³⁾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다만, 신청 또는 추천기간 중 체불사건이 취하되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람은 추천 가능

일곱째,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여덟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등과 관련해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아홉째, 「공정거래법」 위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원

열째, 정부포상지침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등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해서는 체육계 비위 엄벌이란 측면에서 태권도대사범 지정에서 엄격히 배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태권도대사범을

3) 사업주는 사업체의 대표 등을 말하고,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업주와 달리 법인체 또는 비법인 단체의 대표를 의미함

지정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 별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적잖은 한계가 있어 외국인의 경우는 추천 제한이 아니라 특별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으로 정하여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附議)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제한사항들은 태권도대사범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일체의 위법 사항에 관여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원천 제외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다만,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3항 태권도대사범 취소 조건 중 제2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이외의 형사처벌 등을 사유로 지정을 취소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어 위에서 나열한 사항 중 일부는 지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시행령에 규정될 윤리성 기준 관련 조문과 지정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을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기할 경우 법률 체계상 불일치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세부사항을 명기하는 것과 명기하지 않는 3개의 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 세부사항 명기 시〉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 2)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6)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7)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벌금형 또는 과료(科料)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제2호에 준용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 세부사항 삭제 시〉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것
2. 태권도 관련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3.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평가 지표〉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균)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나.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등과 관련해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 단체의 임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p>50</p> <p>0</p>
<p>* 가항의 경우는 배점 50점의 범위 내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다.</p>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그 밖에는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윤리성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론적 의미에서 태권도대사범은 ‘태권도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업적을 가진 사범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제 조건들 즉,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고,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3가지 조건 외에 태권도계에서의 봉사활동 경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봉사성(奉仕性)이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으로서의 봉사성은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지속적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여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자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봉사성의 기준을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지속적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속적 봉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평균 참여횟수를 정하여 차등 배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봉사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자국 내에서의와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배점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태권도가 전 세계 210여 국가에 전파되어 활성화된 것은 초장기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진출과 진출국가 지역사회에의 태권도보급 노력과 봉사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내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등에서 단체 및 기관의 후원을 받아 실시한 봉사보다는 자비 부담의 봉사활동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후진국 등에서 봉사한 실적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후진국가가 치안, 생활수준, 교통편의 사항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지는 의미에서이다. 후진국은 저개발국가로 불리기도 하며 선진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산업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후발개발도상국 등의 용어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다. 후진국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매우 낮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다. 또한 정치가 불안정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도 많다.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률이 높은 데 반해,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은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높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에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로 통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UN에서는 후진국을 저개발국가로 분류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후진국,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간의 분류가 불명확해 OECD 회원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통칭하여 비OECD 회원 국가 범주에 포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OECD 회원 국가를 제외하자고 한 것은 OECD 회원국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하나 GNP는 전 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 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GNP는 평균 2만 달러 정도로서 선진국의 위상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봉사점수를 자국 내 활동 50%와 해외활동 50%로 구분하고 해외의 경우 저개발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해외봉사 50%의 전부(100%)를 인정하고 OECD 회원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해외봉사 50%의 1/2만(50%)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봉사활동 공간이 외국이라 하더라도 봉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해당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해 연도부터는 해외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봉사실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외국에서 활동해 오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도장을 통한 태권도 수련 봉사는 공식적인 봉사 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의 봉사실적은 저변확대를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의 참여 방식의 봉사인 경우 세계태권도

연맹 국가회원단체와 그 밖에 봉사실적은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UNESCO와 같은 국제사회가 공인한 공식 비영리기관에서 공식적(기관장 직인)으로 발행한 실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봉사활동 경력의 경우 공적조서에 기입토록 하고 그 실적 증명은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대한 검증은 국가별 단체별 행정력에 따라 축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고정된 기본 평가 배점보다는 봉사실적에 따라 총 점수 10%내에서 가점(최대 10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대사범의 봉사성 및 활동 경력 기준〉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봉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나.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함. 다만 5시간 이하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 가능. 봉사실적 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 배분 가능 * 봉사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활동 50%(최대 5점), 해외의 경우 비 OECD 회원 국가일 경우만 인정. 다만,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해 연도부터는 해외경력이 아닌 자국 활동경력(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점수에 포함하여 반영)으로 인정. * 실적은 WT회원단체, 지역행정기관, UN 및 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 실적 증명서만 인정 * 평균 실적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으로 하는 것은 각 단체의 서류 보관기한 등을 감안한 것임 	

제3절 전담기관 지정 및 절차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8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전담기관이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행정지원,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국외 재외한인회 및 재외한인체육단체 등과의 협력, ③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④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⑤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가한 업무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매년 시행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2년 단위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주기로 시행할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업무는 더욱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서 공고하면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증을 보유한 사람이 지정 신청을 하거나 관련 단체가 추천서를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담기관은 이러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접수하고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에서 접수된 각종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을 지원할 행정능력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가 적합하다. 또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담기관은 공신력있는 법정단체로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전담기관은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지정 업무를 전담하는 일정 정도의 전담조직을 갖추 필요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전담기관의 기능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제한적 수준에 그치므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의 상설화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태권도법 제21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과 하위법령에 명시하여 독점적 지위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전담기관이 되고자 하는 단체를 엄격히 심사하여 정하는 방식으로 순전히 기관의 능력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방식이다.

반면, 하위법령에 명시하여 독점적 지위를 주는 방식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전담기관을 시행령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조문화한 방식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전담기관을 태권도법시행령에 조문으로 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대상기관은 태권도법에 따른 태권도단체인 국기원(제19조)과 태권도진흥재단(제20조)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와 같이 전담기관을 하위법령에 명시하여 독점적 지위를 주는 방식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속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국내에 태권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체가 복수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그 지정 절차가 최고수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일 경우가 아니면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태권도법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모두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법률에 규정된 목적 사업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국기원은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 태권도 관련 실무적 사업에 중점이 있고,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태권도 관련 실무적 사업보다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단체의 기능을 토대로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단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권도법에 규정된 단체의 사업을 통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대비하여 유추해보면 태권도진흥재단이 행정적 지원조직으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특히, 태권도대사범 지정이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태권도법 제21조의2제1항) 실시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인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부분이 법에서 정한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진흥재단은 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사범을 양성하고, 품·단증을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원에 비해 태권도인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기원은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사업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기원은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를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성으로 인해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태권도대사범 지정과정에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태권도법에 규정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업무 비교〉

국기원(제19조제1항 각호)	태권도진흥재단(제20조제1항 각호)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절차와 관련한 조문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기관 지정관련 시행령 조문〉

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4(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했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절차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3항에서 취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 절차의 합리성과 명료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소 절차의 법령화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직접적인 하위법령 위임 근거는 없으나 제9항을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문구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하위법령으로 취소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포함할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와 관련한 신설 조문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관련 시행령 조문(안)〉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받은 사람에게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후보자 공개 검증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공정하고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제도 도입의 초장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성과 및 후보자별 공적에 따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지정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가칭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시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엄격한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되 태권도계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을 정부부처 및 관련 단체 등의 누리집에 일정기간 공개하여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공개검증과 관련하여 후보자 본인의 공개 검증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이다. 만약 후보자가 공개검증을 거부할 경우 이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강제적 조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하게 하여 후보자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포함할 태권도대사범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과 관련한 신설 조문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대사범 후보자 공개검증관련 시행규칙 조문(안)〉

- 제7조(후보자 공개검증)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공적조서 사항 중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 추천기관 또는 단체,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이 박탈 된 것으로 본다.

3.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가칭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록 태권도법 제21조의2에 가칭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없지만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위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9항의 규정 즉,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활용하여 하위법령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위원회 역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는 중요사항만 규정하고 그 밖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가칭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0~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태권도대사범 지정업무를 통괄하는 주무부서의 국(실)장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정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단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태권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법조계 인사로서 법관, 검사, 변호사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정부 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⑥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있는 사람 등으로 다양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태권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적 및 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문을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등〉

- 제7조의7(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설치)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단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태권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부 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6.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있는 사람
 7.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4. 부상(副賞)의 수여

태권도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 외에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한 각종 지표가 고도의 윤리성과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정된 사람 역시 태권도계에 입문한 이후 태권도대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공적을 보유해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여타의 재정적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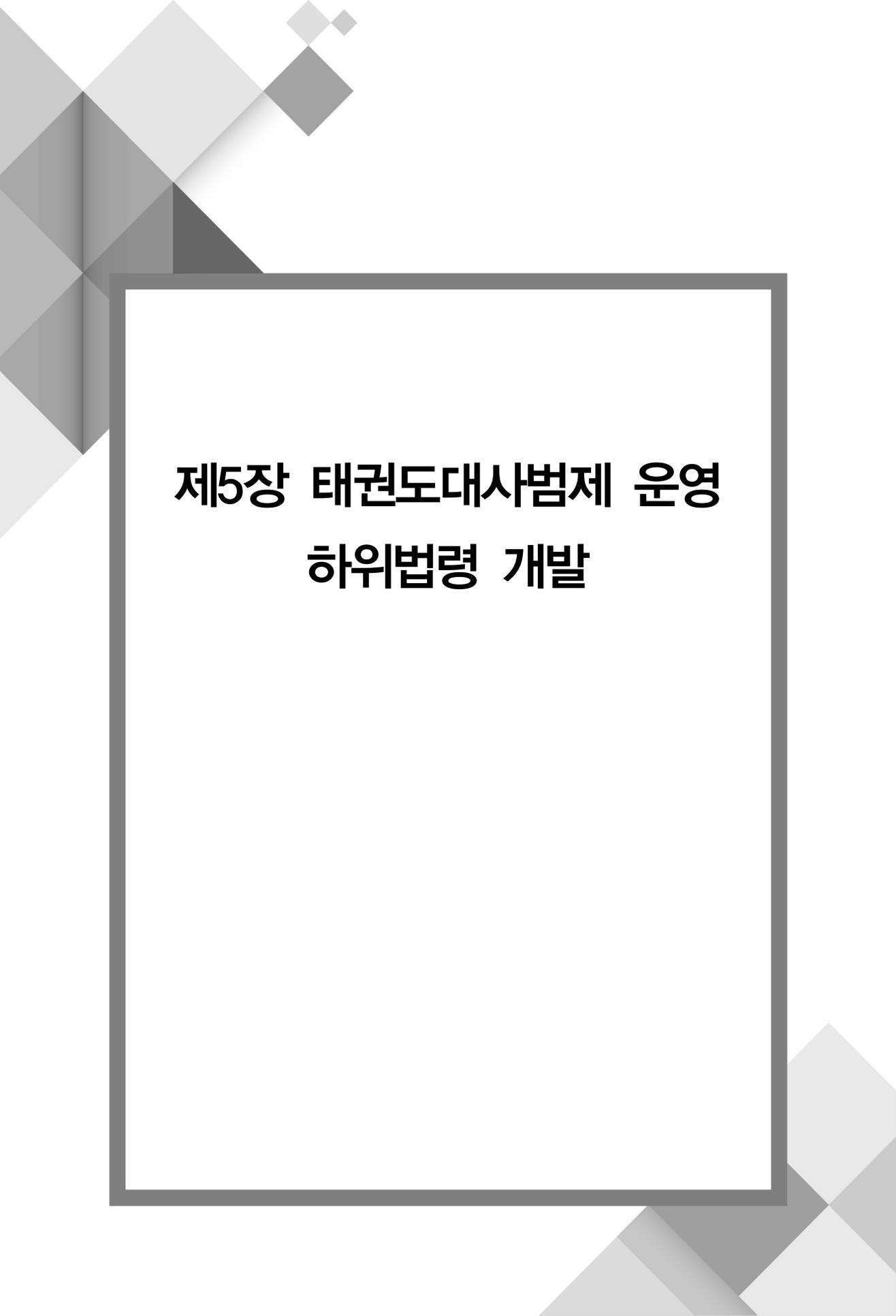
이러한 부상제도는 정식으로 주는 상 이외에 별도로 덧붙여 주는 상금이나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서훈을 비롯하여 각종 포상제도에서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권도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에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하위법령에 부상수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에 포함할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게 수여할 부상과 관련한 신설 조문을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부상 수여관련 시행령 조문(안)〉

제7조의8(부상)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에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태권도법에 태권도대사범에 대한 제도적 수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에 부상규정을 만들어 각종 수혜를 열거하는 것은 법률의 위계구조상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대사범에 대한 수혜사항들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태권도진흥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태권도대사범에게는 명예와 권위 외에도 각종 수수료 지급 등으로 경제적 부상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하위법령 개발

제5장 태권도대사범제 운영 하위법령 개발

제1절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태권도대사범 운영 하위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0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태권도법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것이다.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요건 일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태권도법에 의하면 태권도대사범은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고,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다.(법 제21조의2 제1항).

따라서 태권도법에 의해 태권도대사범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9단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업적과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심사할 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위임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발하는 것, 법 제21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조문화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의 법적 취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태권도인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고, 윤리적 결함이 없는 사람을 지정하여 태권도대사범으로서의 명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공정하고 심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엄격한 지표를 개발하여 '꼭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지정받았다'라고 태권도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 시에도 태권도계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적조서의 주요 내용을 정부부처 및 관련 단체 등의 누리집에 일정기간 공개하여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태권도법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 조문 구성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시행령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윤리성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제9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태권도대사범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설치,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함께 수여할 부상(副賞)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시행규칙에서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 방법, 후보자 공개검증,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신청,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추천 등의 사항을 포함시켰다.

하위법령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태권도대사범 지정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사례 등의 자료와 지표 등을 활용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하위법령안 개발

앞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태권도법 제21조의2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단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개발

앞에서 제시한 시행령을 법률과 대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령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제21조의2(태권도대사법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법(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u>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u> 	<p>제7조의2(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성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권도대사법으로 지정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2)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p>제7조의2(태권도대사법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것 2. 태권도 관련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3.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령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5) 1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6)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p> <p>7)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전 5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p> <p>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벌금형 또는 과료(科料)형을 선고받은 사람</p> <p>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제2호에 준용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p> <p>② 그 밖에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② 그 밖에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령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명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p> <p>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p>	<p>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p>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령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제7조의4(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p> <p>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했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제7조의4(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p> <p>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했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명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제7조의5(태권도대사범지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기원 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천한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부포상 업무를 수행한 	<p>제7조의5(태권도대사범지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기원 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천한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부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

법률	시행령 안 (1) (세부사항 명기안)	시행령안 (2) (세부사항 삭제 안)
	<p>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p> <p>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 진흥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p> <p>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 진흥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의8(부상)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p>

2. 시행규칙 개발

앞에서 제시한 시행규칙을 법률 및 시행령과 대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에서는 시행령 2안을 중심으로 시행규칙을 정리하고자 한다.

시행령 안 (2)	시행규칙 안
<p>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것 2. 태권도 관련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3.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교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p>② 그 밖에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p> <p>②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하고 지정 차수 마다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평가 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조(후보자 공개검증)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별지 4호 서식의 공적조서 사항 중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전담기관, 추천기관 또는 단체,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본다.</p>

시행령 안 (2)	시행규칙 안
<p>제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p>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제7조의4(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p> <p>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제8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승품단 이력서 각 1부

시행령 안 (2)	시행규칙 안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을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했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공적 조서(국내외 보급 기여실적, 봉사 실적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3. 국내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6호서식) 6. 사진(3.5cm×4.5cm) 2장 <p>제9조(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추천) 영 제7조의6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의 직인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9조의 각 호 서류 일체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
<p>제7조의5(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p>	

시행령 안 (2)	시행규칙 안
<p>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기원 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천한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부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 진흥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p>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태권도대사범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제6조 관련)		
1. 지정기준 총점 85점 이상인 자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한다.		
2. 평가방법		
항 목	평가지표	평가 (평점)
윤리성 (50점)	가. 태권도 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하위로 밝혀진 사람 - 배점 50점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50
	나.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 및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일 당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등과 관련해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임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	0
보급실적 기여도	가.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3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50

<p>(50점)</p>	<p>나.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5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85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다.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20년 이상 꾸준히 해 오면서 700명 이상의 후학(유품단자)을 양성한 사람 라. 도장 등을 통해 선수 및 수련생 지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나 본인의 ID가 아닌 차용 ID를 통해 후학에게 유품단을 취득하게 한 사람 또는 후학 양성 활동을 하면서 선수 및 수련생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 후학양성수는 직접 운영한 도장에서 신청하여 취득한 수만 인정(지정 신청자는 본인이 운영한 도장운영 이력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p>	<p>35 20 0</p>
<p>봉사성 (가점제) (10점)</p>	<p>○ 태권도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서, 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봉사실적이 연간 평균 25일 이상인 경우 나. 지역주민, 봉사단체 및 봉사시설의 관계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하고 봉사실적이 연간 평균 15일 이상인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봉사실적 연간 평균 일수는 하루 5시간 이상을 말함. 다만 5시간 이하는 각각 합산하여 5시간이 넘는 경우 1일로 환산 가능. 실적증명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봉사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점수 배분 가능 ※ 봉사점수(10점)는 장소에 따라 자국 활동 50%(최대 5점), 해외의 경우 비 OECD 회원 국가일 경우만 인정. 다만, 거주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해 연도부터는 해외경력이 아닌 자국 활동경력(해외국적 취득 후 한국에 들어와 봉사한 경우도 자국점수에 포함하여 반영)으로 인정. ※ 실적은 WT회원단체, 지역행정기관, UN 및 UNESCO에서 인정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공식 실적 증명서만 인정 ※ 평균실적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으로 하는 것은 각 단체의 서류 보관 기한 등을 감안한 것임</p>	<p>10 5 0</p>

(뒤 쪽)

태권도 보급 실적	
연 월 일	
봉사 실적	
연 월 일	
공적 내용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태권도대사범 지정 결정·취소 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게재**,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범죄경력, 사진,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록부는 10년, 공적조서 및 지정위 심의의결서, 지정 추천서 및 지정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지정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이 동의서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3절 운영 규정(고시)안 개발

태권도대사범 운영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들 규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운영 규정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조문으로 정리하면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적 조항으로서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하여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에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으므로 위원회 기능을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사유, 위원의 해촉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즉, 정족수, 의결 사항, 의결 방법,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결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조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한 비밀누설 금지, 직무윤리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조문을 구성하여 운영 규정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에 사항을 규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년차 등) ①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 년도부터 실시하며, 주기적 지정은 격년으로 한다.

② 태권도대사범 지정은 지정 차수 마다 2인으로 한다. 다만 지정 평가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정 평가 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태권도대사범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태권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기원 승단 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단증을 보유하고 태권도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태권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정부 포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6.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있는 사람
7.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대사법 지정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지정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지정 대상자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지정 대상자의 제자(수련생) 또는 직장, 단체 및 기관, 동호인 조직 등의 동료이거나 동료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지정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00분의 7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태권도대사법 지정 의결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투표결과, 찬반 위원, 이유 등을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1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2. 부결 : 심의안건에 대한 부결

② 의결서는 의결정족사항, 의결내용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부결의 경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관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안건 관계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윤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전담기관 운영 규정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 운영규정은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적 조항으로서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태권도관련 단체가 서로 자기 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태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전담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전담기관은 법 제21조2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행정지원,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국외 공관 등과의 협력,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와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업무로 업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전담기관의 위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원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경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지원 경비가 업무 수행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지원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하고 부적정한 방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조치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일정 연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담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을 2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지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에 대하여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담기관”이라 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조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은 ○○○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법 제21조2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국외 공관 등과의 협력
3.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4. 태권도대사범 지정사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5.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 수행을 위하여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5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년도 태권도 대사범 지정 결과보고서
2. 다음 차수의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진계획

②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경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경비의 잔액 및 이자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관리) ①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지원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하게하고 부적정한 방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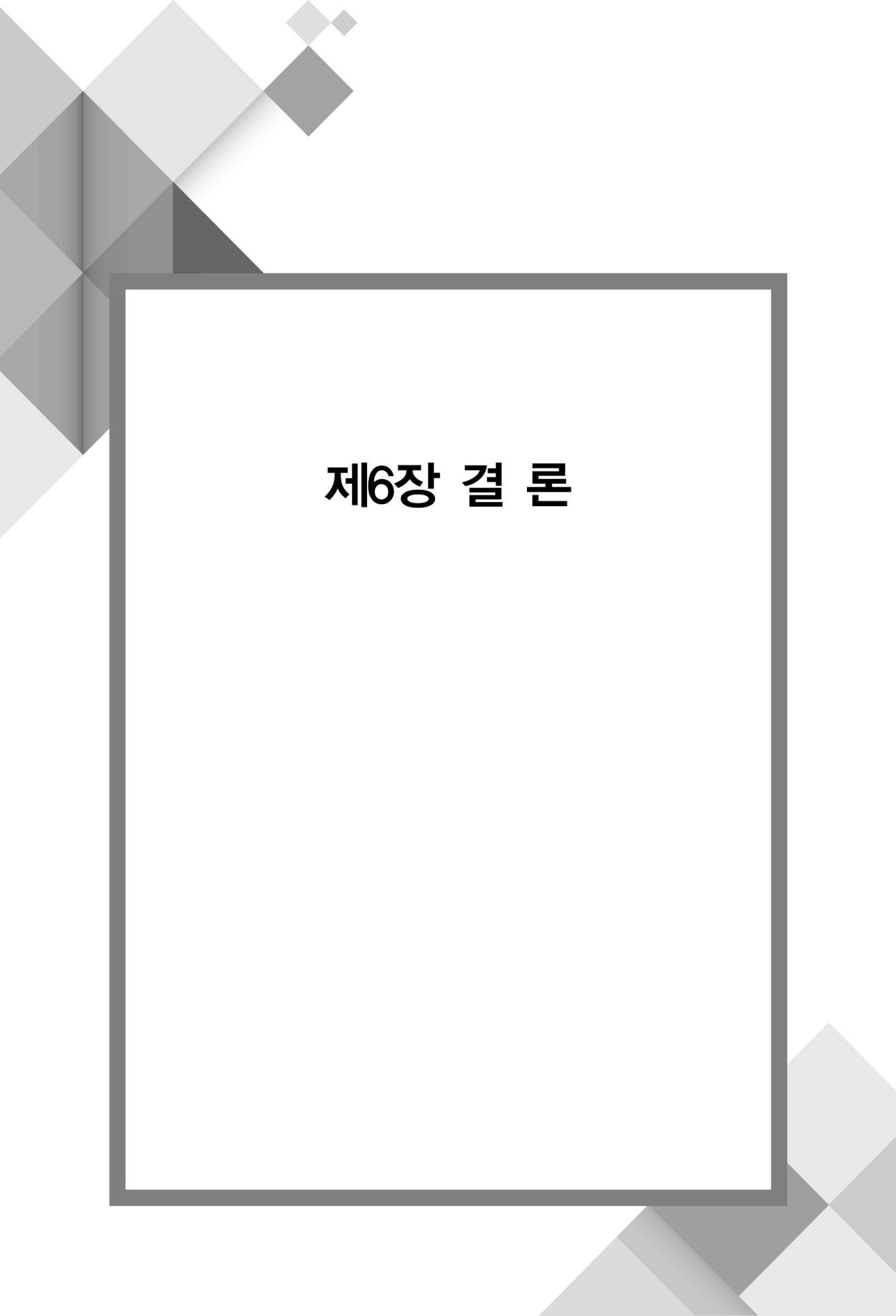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키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장 결 론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0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상태에서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발하고,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필요한 지정 기준 등을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구성에서는 태권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과 지정에 따른 지정 취소, 지정서 발급, 전담기관 설치, 지정 절차,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시행규칙 구성에서는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후보자 공개검증, 지정서 양식, 지정 신청, 지정의 추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규정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규정」 2가지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 4일 시행 예정인 태권도법에서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오롯이 명예만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예성이 강조되는 태권도대사범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과정에서부터 법에 부여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는 명예를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정지표에 대한 엄격성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안을 구성하였다.

먼저, 윤리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윤리성 기준이 과할 정도로 엄격하냐 아니면 관용적이냐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태권도계나 주변 관계자 등으로부터 찬사와 존경심은 우러러 나오느냐 각종 이의제기가 나오느냐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심사 평가기준으로 윤리성 기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를 통틀어 명예직이 갖는 최대한의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정부에 의해서 지정되는

태권도대사범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을 받아야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비위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포상 중 일반국민 포상제의 추천제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항에 규정된 스포츠비리를 행한 사람과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다. 그 밖에 평가지표로서는 봉사성과 보급 기여도 등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록 태권도법 제21조의2에 가칭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없지만,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위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절차적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칭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도 개발하였다.

지정의 대상자가 되는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단증 취득과정 검증도 필요하다고 보고 태권도 승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승단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태권도법에서 정한 태권도대사범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최초의 승품단 보유 시부터 9단증 보유 시까지 일체의 승품단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에서 국기원을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역할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태권도대사범 지정도 매년 시행하기보다는 2년 단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은 공신력 있는 법정단체로 지정 요건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 운영규정」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태권도법 제21조의2 제3항에서 취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 절차의 합리성과 명료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소 절차의 법령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태권도대사범 지정 취소관련 시행령 조문안도 구성하였다.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조문화한 것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공정하고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의 초장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성과 및 후보자별 공적에 따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지정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검증토록 하고 부동의시에는 후보자 자격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지정 심사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태권도대사범제 운영의 법적 취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태권도인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고, 윤리적 결함이 없는 사람을 지정하여 태권도대사범으로서의 명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자에 대한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공정하고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정에 대한 엄격한 지표를 개발하여 태권도대사범은 ‘꼭 지정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지정받았다’라고 태권도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도는 제도로서 존재할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간의 합리적 이해와 민주적 지지이다.

이제 갓 시작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제도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태권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미숙, 성문정, 김대희, 남상우, 곽낙현, 김현정, 심승구(2018). 태권도명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태권도진흥재단.
- 국기원(2019). 2019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 기본계획(안). 내부자료
- 국립무형유산원(2020). 누리집 www.nihc.go.kr
- 문화재청(2020).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 일본무도관(2020). 누리집 <https://www.nipponbudokan.or.jp/about/kanren>
- 태권도진흥재단(2020).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선정사업 운영 규정.
- 태권도진흥재단(2020). 태권도 국내외 현황 및 국가별 우호도 분석. 내부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20). 2020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내부자료
- 한국식품명인협회(2020). 누리집 www.kfgm.kr
- 한국연구재단(2019).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행정안전부(2020). 정부포상업무지침 2020.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재보호법
- 상훈법
- 숙련기술장려법
- 식품산업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20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5건 포함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민간지원·후원을 통한 경기단체의 재원확보 방안 -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	노용구
2 국제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자 장려금 환수제도 정비방안 (비공개)	김대희
3 국민체육센터 이용률 개념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김미옥
4 체육지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연구	정현우
5 생활체육패널조사 구축 기초연구	이영임
6 생활체육 참여 현황 분석 및 참여 확대 방안 -청소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김양례
7 0교시 체육활동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연구	노용구
8 스포츠클럽 디비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성문정
9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운영방안 연구	성문정
10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정현우
11 학교체육관형 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연구 (비공개)	남상우
12 세계수준의 엘리트 역도선수들의 근력 관련 SNPs의 생리학적 기능 검증 (비공개)	민석기
13 인공지능영상 알고리즘을 활용한 보행 시 지면반력 예측 모델 개발	김태완
14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 라이프스킬과 라이프스킬 전이 효과	장창용
15 스포츠산업 신 남방국가 전략적 진출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고경진
16 스포츠 서비스산업 유망업종 도출을 위한 연구	신성연
17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 한국농아인스포츠포럼,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을 중심으로 (현안과제)	김권일
18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 실태조사 기초연구 (현안과제)	이영임
19 국가대표 및 엘리트 운동선수 인권침해 대응 지침 개발 -스포츠과학지원팀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현안과제, 비공개)	박상혁
20 아세안 스포츠산업 거점지원센터 설립 추진방안 (현안과제,비공개)	고경진
21 2019년 한국의 체육지표 (현안과제)	유의동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연구	김대희
2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체육관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김대희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김권일
4 체육인 실태조사 연구	정현우
5 스포츠여가안전관리사(가칭) 국가자격제도 도입 기초연구	김미옥
6 국민체력100 중장기 발전 방안	김양례
7 2020 여자축구 활성화 방안 연구	조현주
8 제2차 체육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미옥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방안 연구	김대희
10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2020년 평가 및 조직체계 개편 연구	김권일
11 2020년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 모니터링 연구	김미숙
12 장애인체육 심판아카데미 교안 개발 연구	김미숙
13 2020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이동철
14 「2020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분석	이영임
15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	노용구
16 근대오종의 국민스포츠화를 위한 전략 방안 연구	김미숙
17 2019년 체육백서 발간 연구	남상우
18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노용구
19 장애인선수 선진화 훈련지원체계 구축 연구	조현주
20 2020 장애인 스포츠과학화 지원 사업	김태완
21 '20년 핸드볼아카데미 우수선수 선발	박수현
22 체력인증 기준개선 및 질환 예방 운동콘텐츠 개발	박세정
23 국민체력100 스포츠활동 인증 노인기 기준 개발	박세정
24 국민체력100 유아기 체력측정 항목 개발	박수현
25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심폐지구력 대체종목 개발 및 기준 동등화	이은
26 한국형 노인치매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3차년도)	송홍선
27 2020년 꿈나무선수 선발 및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스포츠친화기업지수 개발 및 시범사업	장창용
28 제26기 경륜선수후보생 경주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박수현
29 2020 전국 축구장 경기장 현황조사	성봉주
3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검정 개선 연구용역	이상철
31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조은형
32 서울에너지공사 축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이은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3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연구	유의동
3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스포츠 산업체 긴급 현안조사	김민수
35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고경진
36 2019 스포츠산업백서 발간	신성연
37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 고용 및 운영현황 조사	신성연
38 코로나19 관련 2020년 2/4분기 스포츠산업체 운영현황 조사	김상훈
39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스포츠산업 정책 동향 분석 연구	고경진
40 PJB, Motion Bike&Contents의 운동량 적용 알고리즘 연구	신성연
41 체육인재육성 사업 중장기 발전 연구	황종학
42 스포츠산업 비대면 소비지출 현황 분석 연구	김미옥
43 코로나19 관련 2020년 3/4분기 스포츠산업체 운영현황 조사	신성연
44 체육발전 훈·포장 개선방안 연구	김민수
45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제도개선 방안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성문정
46 실전형 태권도 경기를 위한 스마트 전자 판정 시스템 개발	김대희
47 장애인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 운영 방안 연구	황종학
48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김미숙
49 장애인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노용구
50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체 폐업 실태조사	노용구
51 2020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추적 조사분석	고경진
52 코로나 19 확산과 스포츠관련 업종별 소비지출 비교 분석 연구	김민수
53 초등학교선수용 스포츠과학센터 측정평가 도구 개발	신성연

【 2019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15건 포함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연구	김대희
2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방안 연구	김미옥
3 도핑방지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노용구
4 국제대회경기장 사후활용 현황 연구(비공개)	유지곤
5 경제성장이 스포츠참여 및 스포츠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영임
6 전문선수 육성체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방안 연구	김미숙
7 엘리트선수들의 운동 중단이 경기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은
8 아동청소년 심폐지구력 평가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마라토너들로부터 도출된 특정 SNPs의 기능 규명(비공개)	김광준
9 노인 낙상회피능력과 보행 안정성에 실내·외 환경조건이 미치는 영향	김태완
10 노인체력과 치매위험성과의 관련성 분석(비공개)	송홍선
11 학생운동선수들을 위한 라이프스킬(life skills) 프로그램 개발(비공개)	장창용
12 동계스포츠의 산업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박선영
13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 연구	신성연
14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생활체육 정책 수요분석	김민수
15 스포츠산업 신 남북정책 기본 연구	고경진
1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절차 개선방안(현안과제)	김권일
17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제도 개선(현안과제)	김권일
18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현안과제)	김양례
19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개선 방안(현안과제, 비공개)	김양례
20 스포츠기본법 제정안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성문정
21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라이프스킬 프로그램 개발: '멘토리 야구단을 중심으로'(현안과제)	정현우
22 체육인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정현우
23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관련 자격 제도화 방안 탐색(현안과제, 비공개)	노용구
24 스포츠과학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현안과제, 비공개)	조은형
25 스포츠 라이프스킬(life skills) 척도 개발 및 타당화(현안과제)	장창용
26 수영 국가 대표 동작 분석을 위한 수상/수중 영상 촬영용 이동식 플랫폼 개발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7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력 측정 및 평가 매뉴얼 III (현안과제, 비공개)	이진석
28 골프퍼팅 시 관성 센서데이터 신호처리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황중학
29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제도 개선방안(현안과제)	황중학
30 2018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유익동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국민체육센터 지원모델 수요현황 조사	김미옥
2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유의동
3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이영임
4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근대5종 드림팀 스포츠과학지원-체력운동처방 및 기술분석 분야(2차년도)	고병구
5 스포츠클럽 육성법 하위법령 및 지원기준 개발 연구	성문정
6 2019년 장애인선수 선진국형 훈련지원 체계구축 방안 연구	조현주
7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유의동
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개선 분석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체계 재정립 연구	이동철
9 2019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박수현
10 '스포츠발전 공헌자 구술채록' 대상자 풀 선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김미숙
11 체육교습업 신설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김대희
12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김상훈
13 2018년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문항분석	조은형
14 방한 전지훈련 현황 및 활성화 전략 연구	김미옥
15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김대희
16 스포츠클럽 육성 아젠다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남상우
17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방체육회 표준 직무 및 소요인력 설계	성문정
18 국민체력100 초등학생(5-6학년) 체력증진 운동 동영상 제작	민석기
19 스포츠활동인증 추진방안 연구	박세정
20 2019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이동철
21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선진화 방안 연구	김권일
22 2019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 평가	김미숙
23 태권도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	고경진
24 핸드볼 아카데미 우수선수 발굴 지원	박종철
25 2019 가맹단체 상임심판 활동 현장점검 및 평가	김미숙
26 2019 심판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김미숙
27 신규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등 체육시설법령 개정안 수립 연구	김대희
28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유의동
29 2019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분석	이영임
30 제25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성봉주
31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	황종학
32 2019년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	김태완
33 한국형 노인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송홍선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34 2019 종목별 생활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고경진
35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김상훈
36 레저스포츠 법률안 조문 및 입법영향 분석	김대희
37 레저스포츠 시장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김상훈
38 2019년 꿈나무선수 선발 및 향상도 측정 평가	김광준
39 2019 스포츠산업 가계지출 조사	김상훈
40 빅데이터 활용 참여스포츠 소비행태 조사	김민수
41 2018 스포츠산업백서	박선영
42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방안 연구	이동철
43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수
44 2024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유의동
45 실내 테마파크형 스포에듀테인먼트스쿨 서비스 기술 개발(2차년도)	길세기
46 2018 체육백서	조현주
47 스노보드 영상제작 및 교재 개발 연구	박종철
48 크로스컨트리 영상제작 및 교재 개발 연구	문제헌
49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추적 조사, 분석	김민수
50 국민체력100 통계현황 관리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박세정

【 2018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8건 포함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지속가능한 남북체육교류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화방안 연구	성문정
2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한 생활스포츠 참여행태 분석	이영임
3 한국인 최우수 마라톤선수 및 장거리선수들의 심폐지구력 관련 SNPs 검증 및 기능평가(비공개)	김광준
4 한국 엘리트선수들의 근력 및 지구성 유전자 비율 분석(비공개)	민석기
5 방향 전환 동작 수행시 대퇴근육의 피로도가 여성의 전방십자인대 부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문제현
6 한국성인의 만성질환 및 사망 위험과 규칙적인 운동의 관련성 탐색 : KoGES 자료를 중심으로	박수현
7 신장성 근수축 운동 후 전신과 하지 저온 침수가 피로, 근손상 지표, 근기능 및 혈중 FGF21, Irisin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이진석
8 스포츠기업 단계별 성장전략 수립 기본 연구	고경진
9 판타지스포츠에 관한 기초연구	김민수
10 스포츠 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김상훈
11 스포츠 무형가치평가 시스템 실효성 제고 연구(비공개)	정지명
12 이용료 선불 체육시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제도 실행방안(추후 배포예정)	김대희
13 지방자치단체 체육관련 조례분석 및 사업집행 분석(추후 배포예정)	김대희
14 생활체육동호회 조직과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연계 방안(비공개)	남상우
15 초등 스포츠돌봄 교실 운영 방안 연구	정현우
16 스포츠산업 서비스 R&D 육성전략(현안과제)	김상훈
17 장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방안 연구(현안과제)	이동철
18 빙상계 스포츠공정성 실태조사 분석(현안과제, 비공개)	노용구
19 줄부착형 투해머 장력측정장치 개발(현안과제, 비공개)	길세기
20 봅슬레이 러너(Runner) 실물 모형(Mock-up) 제작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1 2018 세계선수권대회 KHS 선수 도마 종목기술 완성도 평가(현안과제, 비공개)	송주호
22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유네스코 석좌사업 발전방안 연구(현안과제)	정현우
23 2017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유의동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바둑교육의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김대희
2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연구	김대희
3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김권일
4 2020 도쿄올림픽대비 근대5종 드림팀 스포츠과학 지원-체력운동처방 및 기술분석 분야	고병구
5 전통무예 실태조사 사업	김대희
6 2018 전국 축구경기장 현황조사 연구-제1세부 서울시 공공 축구 경기장 및 미등록 축구 경기장 현황 조사	이상철
7 2018 선수저변확대지원사업 전문선수반 운영 매뉴얼 제작	이진석
8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체력인증과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방안	고병구
9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사용(배려공간 지정)방안 연구	이동철
10 국민체력100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연구	박세정
11 체육영재 육성사업 종합평가를 통한 사업개선 방안 수립	이진석
12 공공스포츠클럽의 유관기관 협력방안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	남상우
13 2018 서울특별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평가지표 개발	성문정
14 기능성 성장운동기구(톨플러스)의 운동자극이 유연성과 성장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성봉주
15 체지방측정기기(아스테라시스) 체지방 결과값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보정식 추정	성봉주
16 국기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전략 기본구상 연구	성문정
17 장애인학생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수요 조사	이동철
18 2017년 체육백서 발간	조현주
19 2018 대학운동부 평가위원회 운영	한태룡
20 2022 아태마스터스게임유치 사전타당성 용역	유의동
21 2018 상임심판제도 운영 평가	김미숙
22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사업	이동철
23 대한장애인체육회 2018년 종목별 가맹단체 상임심판제도 운영 및 평가	김미숙
24 한국형 노인치매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	송홍선
25 국민체력100 초등학생(5-6학년) 체력증진 운동지침서 개발	민석기
26 국민체력100 초등학생(5-6학년) 체력인증 기준 개발	조은형
27 2018년도 국민체력100 청소년 건강체력기준개발	박세정
28 골프퍼터의 퍼팅시 방향 측정 알고리즘 개발	황중학
29 삼성 EXERCISE 운영 방안	박세정
30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김미옥
31 체육시설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제도 운영방안 수립	김미옥
32 실테마파크형 스포에듀테인먼트스쿨 서비스 기술개발	길세기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33 체육시설안전점검지침 및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김대희
34 제24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주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성봉주
35 무예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김대희
36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방안 연구	김상훈
37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김상훈
38 2017-2018 꿈나무선발 및 경기력 향상도 측정 평가	김광준
39 스포츠산업 법·제도 개선 연구	고경진
40 무형자산 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한 기업 가치평가 시범사업	정지명
41 스포츠산업 해외 트렌드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	김상훈
42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김민수
43 2018 종목별 생활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고경진
44 올림픽공원 노후 경기장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미옥
45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김민수
46 2017 스포츠산업백서	김민수
47 태권도명인제도	김미숙
4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기간행물 안내

□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은 체육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산업분야 등 최신 체육정보를 폭넓게 소개하는 체육전문잡지입니다.



- 발행일 : 2, 5, 8, 11월 말(계간)
- 1년 구독료 : 20,000원 * 날권 6,000원
-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 체육과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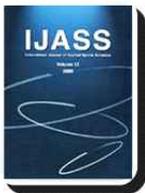
『체육과학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체육종합학술지입니다.



- 발행일 : 3, 6, 9, 12월 말(계간)
-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 * 29권1호(2018년 3월 31일 발행)부터 전자저널(e-journal)로 발행됩니다.

□ IJASS

『IJASS(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체육종합영문학술지입니다.



- 발행일 : 6, 12월 말(반년간)
- 구독신청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 * 30권1호(2018년 6월 30일 발행)부터 전자저널(e-journal)로 발행됩니다.

□ 시포커스

스포츠산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국내 배구산업 경영현황 분석 : 생활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2020-6월_55호)
국내 골프산업 경영현황 분석 : 생활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2020-7월_56호)
왜 서비스인가? : 스포츠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과 아젠다	(제2020-8월_57호)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 수출입 동향분석 및 시사점: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제2020-9월_58호)
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분석: 육상 종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2020-10월_59호)
수상레저스포츠산업 현황 분석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2020-11월_60호)
코로나19 팬데믹과 스포츠산업의 변화	(제2020-12월_61호)
코로나-19, 무엇이 달라졌나?: 스포츠산업 업종별 소비지출 변화	(제2021-3월_62호)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소비문화: 스포츠산업 소비자행동 변화와 전망	(제2021-4월_63호)

□ 이슈페이퍼

스포츠산업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성장에 필요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한국 대학스포츠 현황 및 발전 방향	(제2019-12월_52호)
코로나가 국내 프로스포츠에 미친 영향과 극복 과정, 그리고 향후 과제	(제2020-5월_53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스포츠판 그리고 스포츠의 미래	(제2020-6월_54호)
코로나19(COVID-19)를 통해서 본 미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타격과 대처 그리고 팬의 가치	(제2020-7월_55호)
코로나19와 독일스포츠 : 축구를 통해 보는 프로스포츠 및 생활체육에 대한 영향	(제2020-8월_56호)
코로나19에 따른 스포츠 테크놀로지 동향 및 시사점	(제2020-9월_57호)
뉴노멀시대, 프로스포츠 관람소비 변화에 따른 팬층 확대 방안	(제2020-10월_58호)
코로나19에 따른 태권도장 활성화 방안 탐색	(제2020-11월_59호)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내 스포츠산업의 뉴노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제2020-12월_60호)

* 시포커스 및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 스포츠산업지식정보-스포츠산업지식(<https://spobiz.kspo.or.kr>)

태권도대사범 운영방안 연구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인쇄처 : (주)비전테크시스템즈 ☎02)3432-7132

편집디자인 : (주)비전테크시스템즈 ☎02)3432-7132
